

화성 향남 롯데캐슬 시그니처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공식 홈페이지 https://www.hwaseong-lottecastlesignature.com	대표번호 1551-1542	공식 홈페이지에서 분양일정, 청약안내 등 분양 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화성시 거주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6개월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10.21.(수)	2026.11.02.(월)	2026.11.03.(화)	2026.11.04.(수)	2026.11.10.(화)	2026.11.14.(토) ~ 11.17.(화) [4일간]	2026.11.23.(월) ~ 11.25.(수) [3일간]		

건본주택 운영 안내사항

- 건본주택 개관일부터 자유 관람 가능하며, 건본주택 관람이 어려운 고객님의께서는 홈페이지(<https://www.hwaseong-lottecastlesignature.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본주택 내 주차 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 또는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이후에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에 한하여 자격확인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 등으로 건본주택 입장 및 관람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 발표 후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 방문과 관련하여 별도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사업주체로 송부한 당첨자 성명/연락처 기준)
- 화성 향남 롯데캐슬 시그니처 건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1551-1542)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 및 청약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문의 전화가 많아 상담전화 연결이 안될 경우가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또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에 따른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 및 관계법령을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의 청약자격 사전관리 및 청약 가상체험을 통하여 착오신청 등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통 유의사항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0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생아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혼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 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 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본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부모, 장안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 (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판단합니다. (※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판단합니다.)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 주택 소유로 판단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1순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 (동점 시 추첨)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hwaseong-lottecastlesignature.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을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 ※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 ① :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 ② :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전환 이후 청약예금 ▶ 청약저축 재전환 불가)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신청 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신청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
- (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 (청약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O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2026.06.15. 시행된 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0.21.(수)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화성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 발표	서류 접수	계약 체결
일정	2026.11.02.(월)	2026.11.03.(화)	2026.11.04.(수)	2026.11.10.(화)	2026.11.14.(토) ~ 11.17.(화) [4일간]	2026.11.23.(월) ~ 11.25.(수) [3일간]
방법	PC·모바일 : 청약홈 (09:00 ~ 17:30) 현장접수 : 화성 향남 롯데캐슬 시그니처 건본주택	PC·모바일 : 청약홈 (09:00 ~ 17:30) 현장접수 : 청약통장 가입은행		PC·모바일 : 청약홈	건본주택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하림리 374 (화성 향남 롯데캐슬 시그니처 건본주택, 10:00 ~ 17:00)	

※ 고려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화성 향남 롯데캐슬 시그니처 건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해 인터넷(PC, 모바일) 청약만 가능합니다. (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합니다.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인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당첨자 발표일(2026.11.10.)로부터 6개월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접수 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서류 접수와 추첨 및 계약기간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에 관한 사항 (「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매수자(분양권 포함)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발코니 확장,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전매 포함), 추가선택품목 계약체결 등으로 발생하는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공동납부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자가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자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총 납부세액	20,000원	40,000원	70,000원	150,000원	350,000원
사업주체 부담	10,000원	20,000원	35,000원	75,000원	175,000원
계약자 부담	10,000원	20,000원	35,000원	75,000원	175,000원

-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 거래가격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상기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우체국, 시중은행)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자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화성특례시 주택정책과 - 24356호 (2026.10.2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상신리 산 13-13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3층 ~ 지상 29층, 17개동, 총 1,54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주차대수 총 2,263대(아파트 2,236대, 근생 27대)
[특별공급 751세대(기관추천 : 132세대, 다자녀가구 : 151세대, 신혼부부 : 199세대, 노부모부양 : 46세대, 생애최초 : 91세대, 신생아 : 132세대) 포함]

입주예정시기 : 2029년 12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

공급대상 (민영주택)

(단위 : ㎡,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약식 표기 (타입)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율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유선배정 세대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신생아	계		
2026 000502	01	084.3522A	84A	84.3522	25.3724	109.7246	61.1944	170.9190	54.9441	291	29	29	43	9	20	29	159	132	11
	02	084.4355B	84B	84.4355	25.7307	110.1662	61.2548	171.4210	54.9983	136	13	13	20	4	9	13	72	64	5
	03	084.1443C	84C	84.1443	25.5242	109.6685	61.0436	170.7121	54.8087	412	41	41	62	12	28	41	225	187	17
	04	084.4447D	84D	84.4447	25.9653	110.4100	61.2616	171.6716	55.0043	89	9	9	13	3	6	9	49	40	4
	05	084.5473E	84E	84.5473	26.4844	111.0317	61.3359	172.3676	55.0712	301	30	30	45	9	21	30	165	136	12
	06	084.8194F	84F	84.8194	26.9369	111.7563	61.5332	173.2895	55.2484	83	8	8	13	2	6	8	45	38	3
	07	084.3216G	84G	84.3216	26.9293	111.2509	61.1721	172.4230	54.9241	19	2	2	3	1	1	2	11	8	1
	08	102.6403	102	102.6403	32.1494	134.7897	74.4617	209.2514	66.8563	56	-	5	-	2	-	-	7	49	2
	09	112.1044	112	112.1044	32.7772	144.8816	81.3277	226.2093	73.0209	78	-	7	-	2	-	-	9	69	3
	10	120.3418	120	120.3418	36.3340	156.6758	87.3037	243.9795	78.3865	77	-	7	-	2	-	-	9	68	3
합계										1,542	132	151	199	46	91	132	751	791	61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 상의 표기(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로 청약 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 대상의 '주택형(전용면적 기준)'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 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 등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대지비율은 전체 대지면적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분배 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비율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면적표현은 소수점 넷째 자리 제곱미터(㎡)까지 표현되며(면적산출 근거에 의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 등 처리),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비율 기준으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산출 후 전체 총 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합니다.
- 본 표시 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색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확정측량시 소수점 이하 대지면적 차이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약식표기 (타입)		84A	84B	84C	84D	84E	84F	84G	102	112	120	합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등	6	2	10	1	2	1	-	-	-	-	22
	장기복무 제대군인	2	1	5	1	2	1	-	-	-	-	12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2	1	5	1	3	1	-	-	-	-	13
	장애인	경기도	5	3	4	2	5	1	1	-	-	21
		서울특별시	1	1	2	-	1	1	-	-	-	6
		인천광역시	1	1	2	-	1	1	-	-	-	6
	중소기업 근로자	10	3	10	3	15	1	1	-	-	-	43
	북한이탈주민	2	1	3	1	1	1	-	-	-	-	9
소계		29	13	41	9	30	8	2	-	-	-	13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해당시·도(화성시 및 경기도) 거주자 (50%)	15	7	21	5	15	4	1	3	4	4	79
	기타지역(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14	6	20	4	15	4	1	2	3	3	72
신혼부부 특별공급		43	20	62	13	45	13	3	-	-	-	199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9	4	12	3	9	2	1	2	2	2	46
생애최초 특별공급		20	9	28	6	21	6	1	-	-	-	91
신생아 특별공급		29	13	41	9	30	8	2	-	-	-	132
합계		159	72	225	49	165	45	11	7	9	9	751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 표기 (타입)	동, 라인	층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5%)		종도금(60%)						잔금(35%)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 시	계약 후 30일 이내	2027-06-18	2028-01-21	2028-08-18	2028-12-22	2029-04-20	2029-08-27		입주시점기간
84A	104동 4호 109동 1,2호	1층	2	176,952,800	295,047,200	-	472,000,000	10,000,000	13,6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165,200,000	
		2층	3	184,825,700	308,174,300	-	493,000,000	10,000,000	14,65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172,550,000	
		3층	3	190,824,100	318,175,900	-	509,000,000	10,000,000	15,45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178,150,000	
		4층	3	194,948,000	325,052,000	-	520,000,000	10,000,000	16,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182,000,000	
		5-9층	15	196,822,500	328,177,500	-	525,000,000	10,000,000	16,25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183,750,000	
		10층 이상	57	198,697,000	331,303,000	-	530,000,000	10,000,000	16,5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185,500,000	
	105동 3,4호 106동 3호	2층	3	186,700,200	311,299,800	-	498,000,000	10,000,000	14,9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174,300,000	
		3층	3	192,698,600	321,301,400	-	514,000,000	10,000,000	15,7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179,900,000	
		4층	3	196,822,500	328,177,500	-	525,000,000	10,000,000	16,25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183,750,000	
		5-9층	15	198,697,000	331,303,000	-	530,000,000	10,000,000	16,5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185,500,000	
		10층 이상	60	200,946,400	335,053,600	-	536,000,000	10,000,000	16,8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187,600,000	
		107동 1호 112동 3호 113동 3,4호 114동 2호	1층	3	175,078,300	291,921,700	-	467,000,000	10,000,000	13,35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163,450,000
	2층	5	182,951,200	305,048,800	-	488,000,000	10,000,000	14,4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170,800,000		
	3층	5	188,949,600	315,050,400	-	504,000,000	10,000,000	15,2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176,400,000		
	4층	5	193,073,500	321,926,500	-	515,000,000	10,000,000	15,75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180,250,000		
	5-9층	25	194,948,000	325,052,000	-	520,000,000	10,000,000	16,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182,000,000		
	10층 이상	81	196,822,500	328,177,500	-	525,000,000	10,000,000	16,25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183,750,000		
	84B	105동 1호	2층	1	189,324,500	315,675,500	-	505,000,000	10,000,000	15,25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176,750,000
			3층	1	195,322,900	325,677,100	-	521,000,000	10,000,000	16,05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182,350,000	
			4층	1	199,446,800	332,553,200	-	532,000,000	10,000,000	16,6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186,200,000	
5-9층			5	201,696,200	336,303,800	-	538,000,000	10,000,000	16,9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188,300,000		
10층 이상			20	203,570,700	339,429,300	-	543,000,000	10,000,000	17,15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190,050,000		
106동 1호		2층	1	187,450,000	312,550,000	-	500,000,000	10,000,000	15,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175,000,000	
		3층	1	193,448,400	322,551,600	-	516,000,000	10,000,000	15,8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180,600,000	
		4층	1	197,572,300	329,427,700	-	527,000,000	10,000,000	16,35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184,450,000	
		5-9층	5	199,446,800	332,553,200	-	532,000,000	10,000,000	16,6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186,200,000	
		10층 이상	20	201,696,200	336,303,800	-	538,000,000	10,000,000	16,9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188,300,000	
114동 1,4호 115동 1호	2층	3	185,575,500	309,424,500	-	495,000,000	10,000,000	14,75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173,250,000		
	3층	3	191,573,900	319,426,100	-	511,000,000	10,000,000	15,55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178,850,000		
	4층	3	195,697,800	326,302,200	-	522,000,000	10,000,000	16,1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182,700,000		
	5-9층	15	197,572,300	329,427,700	-	527,000,000	10,000,000	16,35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184,450,000		
	10층 이상	56	199,821,700	333,178,300	-	533,000,000	10,000,000	16,65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186,550,000		
84C	104동 2호 110동 2호	2층	2	186,700,200	311,299,800	-	498,000,000	10,000,000	14,9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174,300,000	
		3층	2	192,698,600	321,301,400	-	514,000,000	10,000,000	15,7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179,900,000	
		4층	2	196,822,500	328,177,500	-	525,000,000	10,000,000	16,25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183,750,000	
		5-9층	10	198,697,000	331,303,000	-	530,000,000	10,000,000	16,5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185,500,000	
		10층 이상	40	200,571,500	334,428,500	-	535,000,000	10,000,000	16,75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187,250,000	
		101동 2호 103동 1,2호 108동 3호 110동 4호 111동 1,2호	2층	7	184,825,700	308,174,300	-	493,000,000	10,000,000	14,65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172,550,000
	3층		7	190,824,100	318,175,900	-	509,000,000	10,000,000	15,45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178,150,000	
	4층		7	194,948,000	325,052,000	-	520,000,000	10,000,000	16,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182,000,000	
	5-9층		35	196,822,500	328,177,500	-	525,000,000	10,000,000	16,25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183,750,000	
	10층 이상		116	198,697,000	331,303,000	-	530,000,000	10,000,000	16,5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185,500,000	
	101동 4호 102동 1,2호 108동 1호 111동 4호 112동 4호 116동 1,2호		1층	1	175,078,300	291,921,700	-	467,000,000	10,000,000	13,35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163,450,000
		2층	8	182,951,200	305,048,800	-	488,000,000	10,000,000	14,4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170,800,000	
		3층	8	188,949,600	315,050,400	-	504,000,000	10,000,000	15,2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176,400,000	
		4층	8	192,698,600	321,301,400	-	514,000,000	10,000,000	15,7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179,900,000	
		5-9층	40	194,948,000	325,052,000	-	520,000,000	10,000,000	16,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182,000,000	
		10층 이상	119	196,822,500	328,177,500	-	525,000,000	10,000,000	16,25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183,750,000	
	84D	108동 4호	2층	1	187,824,900	313,175,100	-	501,000,000	10,000,000	15,05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175,350,000
			3층	1	193,823,300	323,176,700	-	517,000,000	10,000,000	15,85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180,950,000
			4층	1	197,947,200	330,052,800	-	528,000,000	10,000,000	16,4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184,800,000
			5-9층	5	200,196,600	333,803,400	-	534,000,000	10,000,000	16,7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186,900,000
10층 이상			18	202,071,100	336,928,900	-	539,000,000	10,000,000	16,95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188,650,000	
112동 1호 117동 1,3호			1층	1	178,077,500	296,922,500	-	475,000,000	10,000,000	13,75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166,250,000
		2층	3	185,950,400	310,049,600	-	496,000,000	10,000,000	14,8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173,600,000	
		3층	3	191,948,800	320,051,200	-	512,000,000	10,000,000	15,6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179,200,000	
		4층	3	196,072,700	326,927,300	-	523,000,000	10,000									

약식 표기 (타입)	동, 라인	층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 시	계약 후 30일 이내	2027-06-18	2028-01-21	2028-08-18	2028-12-22	2029-04-20	2029-08-27		입주자집기간		
84E	104동 3호 105동 2호 106동 2호	2층	3	188,949,600	315,050,400	-	504,000,000	10,000,000	15,2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176,400,000		
		3층	3	194,948,000	325,052,000	-	520,000,000	10,000,000	16,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182,000,000		
		4층	3	199,071,900	331,928,100	-	531,000,000	10,000,000	16,55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186,850,000		
		5-9층	15	201,321,300	335,678,700	-	537,000,000	10,000,000	16,85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187,950,000		
		10층 이상	56	203,195,800	338,804,200	-	542,000,000	10,000,000	17,1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189,700,000		
	101동 3호	2층	1	187,075,100	311,924,900	-	499,000,000	10,000,000	14,95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174,650,000		
		3층	1	193,073,500	321,926,500	-	515,000,000	10,000,000	15,75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180,250,000		
		4층	1	197,197,400	328,802,600	-	526,000,000	10,000,000	16,3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184,100,000		
		5-9층	5	199,071,900	331,928,100	-	531,000,000	10,000,000	16,55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186,850,000		
		10층 이상	18	201,321,300	335,678,700	-	537,000,000	10,000,000	16,85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187,950,000		
	103동 3호 107동 2호 108동 2호 111동 3호 112동 2호 113동 2호 115동 2호 117동 2호	1층	2	177,327,700	295,672,300	-	473,000,000	10,000,000	13,65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165,550,000		
		2층	8	185,200,600	308,799,400	-	494,000,000	10,000,000	14,700,000	49,400,000	49,400,000	49,400,000	49,400,000	49,400,000	49,400,000	49,400,000	172,900,000		
		3층	8	191,199,000	318,801,000	-	510,000,000	10,000,000	15,5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178,500,000		
		4층	8	195,322,900	325,677,100	-	521,000,000	10,000,000	16,05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182,350,000		
		5-9층	40	197,197,400	328,802,600	-	526,000,000	10,000,000	16,3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184,100,000		
		10층 이상	129	199,071,900	331,928,100	-	531,000,000	10,000,000	16,55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186,850,000		
		84F	109동 3호 110동 3호	2층	1	190,074,300	316,925,700	-	507,000,000	10,000,000	15,350,000	50,700,000	50,700,000	50,700,000	50,700,000	50,700,000	50,700,000	50,700,000	177,450,000
				3층	2	196,447,600	327,552,400	-	524,000,000	10,000,000	16,2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183,400,000
4층				2	200,571,500	334,428,500	-	535,000,000	10,000,000	16,75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187,250,000	
5-9층	10			202,446,000	337,554,000	-	540,000,000	10,000,000	17,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189,000,000		
10층 이상	40			204,695,400	341,304,600	-	546,000,000	10,000,000	17,3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191,100,000		
114동 3호	2층	1	188,199,800	313,800,200	-	502,000,000	10,000,000	15,1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175,700,000			
	3층	1	194,573,100	324,426,900	-	519,000,000	10,000,000	15,95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181,650,000			
	4층	1	198,322,100	330,677,900	-	529,000,000	10,000,000	16,45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185,150,000			
	5-9층	5	200,571,500	334,428,500	-	535,000,000	10,000,000	16,75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187,250,000			
	10층 이상	20	202,446,000	337,554,000	-	540,000,000	10,000,000	17,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189,000,000			
84G	103동 4호	2층	1	185,575,500	309,424,500	-	495,000,000	10,000,000	14,75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173,250,000		
		3층	1	191,573,900	319,426,100	-	511,000,000	10,000,000	15,55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178,850,000		
		4층	1	195,697,800	326,302,200	-	522,000,000	10,000,000	16,1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182,700,000		
		5-9층	5	197,572,300	329,427,700	-	527,000,000	10,000,000	16,35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184,450,000		
		10층 이상	11	199,446,800	332,553,200	-	532,000,000	10,000,000	16,6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186,200,000		
102	104동 1호 110동 1호	2층	2	209,916,000	350,089,000	34,986,000	595,000,000	10,000,000	19,75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208,250,000		
		3층	2	216,619,200	361,277,600	36,103,200	614,000,000	10,000,000	20,7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214,900,000		
		4층	2	221,205,600	368,926,800	36,867,600	627,000,000	10,000,000	21,350,000	62,700,000	62,700,000	62,700,000	62,700,000	62,700,000	62,700,000	62,700,000	219,450,000		
		5-9층	10	223,675,200	373,045,600	37,279,200	634,000,000	10,000,000	21,700,000	63,400,000	63,400,000	63,400,000	63,400,000	63,400,000	63,400,000	63,400,000	221,900,000		
		10층 이상	40	225,792,000	376,576,000	37,632,000	640,000,000	10,000,000	22,000,000	64,000,000	64,000,000	64,000,000	64,000,000	64,000,000	64,000,000	64,000,000	224,000,000		
112	107동 3호	2층	1	222,264,000	370,692,000	37,044,000	630,000,000	10,000,000	21,5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220,500,000		
		3층	1	229,672,800	383,048,400	38,278,800	651,000,000	10,000,000	22,550,000	65,100,000	65,100,000	65,100,000	65,100,000	65,100,000	65,100,000	65,100,000	227,850,000		
		4층	1	234,259,200	390,697,600	39,043,200	664,000,000	10,000,000	23,2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232,400,000		
		5-9층	5	236,728,800	394,816,400	39,454,800	671,000,000	10,000,000	23,550,000	67,100,000	67,100,000	67,100,000	67,100,000	67,100,000	67,100,000	67,100,000	234,850,000		
		10층 이상	18	239,198,400	398,935,200	39,866,400	678,000,000	10,000,000	23,900,000	67,800,000	67,800,000	67,800,000	67,800,000	67,800,000	67,800,000	67,800,000	237,300,000		
	113동 1호 115동 3호	1층	1	210,621,600	351,274,800	35,103,600	597,000,000	10,000,000	19,85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208,950,000		
		2층	2	220,147,200	367,161,600	36,691,200	624,000,000	10,000,000	21,200,000	62,400,000	62,400,000	62,400,000	62,400,000	62,400,000	62,400,000	62,400,000	218,400,000		
		3층	2	227,203,200	378,929,600	37,867,200	644,000,000	10,000,000	22,200,000	64,400,000	64,400,000	64,400,000	64,400,000	64,400,000	64,400,000	64,400,000	225,400,000		
		4층	2	232,142,400	387,167,200	38,690,400	658,000,000	10,000,000	22,900,000	65,800,000	65,800,000	65,800,000	65,800,000	65,800,000	65,800,000	65,800,000	230,300,000		
		5-9층	10	234,259,200	390,697,600	39,043,200	664,000,000	10,000,000	23,2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232,400,000		
120	101동 1호 106동 4호 109동 4호	1층	1	228,261,600	380,694,800	38,043,600	647,000,000	10,000,000	22,350,000	64,700,000	64,700,000	64,700,000	64,700,000	64,700,000	64,700,000	64,700,000	226,450,000		
		2층	3	238,492,800	397,758,400	39,748,800	676,000,000	10,000,000	23,800,000	67,600,000	67,600,000	67,600,000	67,600,000	67,600,000	67,600,000	67,600,000	236,600,000		
		3층	3	246,254,400	410,703,200	41,042,400	698,000,000	10,000,000	24,900,000	69,800,000	69,800,000	69,800,000	69,800,000	69,800,000	69,800,000	69,800,000	244,300,000		
		4층	3	251,546,400	419,529,200	41,924,400	713,000,000	10,000,000	25,65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249,550,000		
		5-9층	15	254,016,000	423,648,000	42,336,000	720,000,000	10,000,000	26,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252,000,000		
		10층 이상	52	256,485,600	427,766,800	42,747,600	727,000,000	10,000,000	26,350,000	72,700,000	72,700,000	72,700,000	72,700,0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 동, 층, 향, 일조, 조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주택형별, 층별로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의 납부일정은 계약자가 사전에 확인하여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대출은 정부정책, 금융기관의 대출조건 및 계약자의 신용·보증한도 등에 따라 제한 또는 불가할 수 있으며,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계약자는 해당 납부일정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 등을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또는 잔금 대출의 불가·축소 등을 사유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제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분양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 [종합토지세(분리과세 기준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은 미포함된 금액이며, 공급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 등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사용검사일 이후 약정된 잔금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2차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발코니 확장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입주지정기간
84A	24,300,000	2,430,000	21,870,000
84B	26,500,000	2,650,000	23,850,000
84C	24,400,000	2,440,000	21,960,000
84D	26,700,000	2,670,000	24,030,000
84E	24,500,000	2,450,000	22,050,000
84F	26,700,000	2,670,000	24,030,000
84G	25,500,000	2,550,000	22,950,000
102	31,100,000	3,110,000	27,990,000
112	35,000,000	3,500,000	31,500,000
120	37,100,000	3,710,000	33,390,000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건보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풍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그 위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사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색채 및 사양이 실 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설계변경, 자재발주, 골조공사 등)의 문제로 계약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변경)계약이 불가능하며, 발코니 확장 계약 등은 건보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건보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시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풍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세대는 비확장 발코니에 선풍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됩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인접세대(좌/우, 상/하부 세대 등)가 비확장일 경우 추가 단열공사를 위해 확장 세대의 바닥/천정 및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를 부착하여 벽 또는 천장이 돌출 시공될 수 있으며, 비확장세대 하부에 위치하는 발코니 확장 세대에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 천장이 돌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평면옵션 선택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의 규격/수량/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 배관 위치,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타입, 위치 수량 등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 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경우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미선택 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발코니확장 포함 품목(주방가구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단, 거실우물천장은 기본제품으로 설치되며 비확장시에는 설치위치가 및 규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미선택 세대는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비확장 세대의 경우 주방 레인지후드, 세대환기, 욕실 배기용 덕트가 발코니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 선택 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수전 및 배수관 등이 외기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동파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발코니는 계획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풍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 또는 천장속으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미관 저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선택품목 (유상옵션)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현관 마감 특화

약식표기 (타입)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비고
			계약 시	입주지정일	
84A, 84B, 84C, 84D, 84E, 84F, 102, 112, 120	현관 중문 (3연동 슬라이딩)	1,180,000	118,000	1,062,000	-
84G	현관 중문 (스윙도어)	1,330,000	133,000	1,197,000	-

- 현관중문은 장식성 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 도어가 아닙니다.
- 현관중문 시공 시 중문을 또는 벽체와 다소 이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먼지 및 외풍 등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옵션 미선택 시 해당 부위는 도배지 및 천장지로 마감되며, 중문 설치 여부에 따라 천장 몰딩, 가구, 디딤판, 벽 패널 등의 위치 및 형태와 신발장 케이스 너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의 개폐 방향은 해당 세대의 단지 배치에 따라 좌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84G 타입은 평면 특성상 스윙형 현관 중문이 설치됩니다.
- 본공사 시 제조사 사정 및 현장 여건에 따라 프레임, 유리, 등 세부 사양과 디자인이 견본주택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벽 마감 특화

약식표기 (타입)	선택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비고
				계약 시	입주지정일	
84A	선택 ①	- 거실, 주방 아트월 : 유럽산 세라믹타일, 공용 시트판넬 - 안방, 침실1, 침실2 : 프리미엄 벽지 (디아방)	2,960,000	296,000	2,664,000	-
	선택 ②	- 거실, 주방 아트월 : 유럽산 세라믹타일, 공용 프리미엄 벽지 - 안방, 침실1, 침실2 : 프리미엄 벽지 (디아방)	2,020,000	202,000	1,818,000	-
84B	선택 ①	- 거실, 주방 아트월 : 유럽산 세라믹타일, 공용 시트판넬 - 안방, 침실1, 침실2, 알파룸 : 프리미엄 벽지 (디아방)	3,040,000	304,000	2,736,000	-
	선택 ②	- 거실, 주방 아트월 : 유럽산 세라믹타일, 공용 프리미엄 벽지 - 안방, 침실1, 침실2, 알파룸 : 프리미엄 벽지 (디아방)	1,970,000	197,000	1,773,000	-
84C	선택 ①	- 거실, 주방 아트월 : 유럽산 세라믹타일, 공용 시트판넬 - 안방, 침실1, 침실2 : 프리미엄 벽지 (디아방)	2,710,000	271,000	2,439,000	-
	선택 ②	- 거실, 주방 아트월 : 유럽산 세라믹타일, 공용 프리미엄 벽지 - 안방, 침실1, 침실2 : 프리미엄 벽지 (디아방)	1,640,000	164,000	1,476,000	-
84D	선택 ①	- 거실, 주방 아트월 : 유럽산 세라믹타일, 공용 시트판넬 - 안방, 침실1, 침실2, 알파룸 : 프리미엄 벽지 (디아방)	2,810,000	281,000	2,529,000	-
	선택 ②	- 거실, 주방 아트월 : 유럽산 세라믹타일, 공용 프리미엄 벽지 - 안방, 침실1, 침실2, 알파룸 : 프리미엄 벽지 (디아방)	1,750,000	175,000	1,575,000	-
84E	선택 ①	- 거실, 주방 아트월 : 유럽산 세라믹타일, 공용 시트판넬 - 안방, 침실1, 침실2, 알파룸 : 프리미엄 벽지 (디아방)	2,950,000	295,000	2,655,000	-
	선택 ②	- 거실, 주방 아트월 : 유럽산 세라믹타일, 공용 프리미엄 벽지 - 안방, 침실1, 침실2, 알파룸 : 프리미엄 벽지 (디아방)	1,850,000	185,000	1,665,000	-
84F	선택 ①	- 거실, 주방 아트월 : 유럽산 세라믹타일, 공용 시트판넬 - 안방, 침실1, 침실2, 알파룸, 베타룸 : 프리미엄 벽지 (디아방)	3,150,000	315,000	2,835,000	-
	선택 ②	- 거실, 주방 아트월 : 유럽산 세라믹타일, 공용 프리미엄 벽지 - 안방, 침실1, 침실2, 알파룸, 베타룸 : 프리미엄 벽지 (디아방)	1,980,000	198,000	1,782,000	-
84G	선택 ①	- 거실, 주방 아트월 : 유럽산 세라믹타일, 공용 시트판넬 - 안방, 침실1, 침실2 : 프리미엄 벽지 (디아방)	2,930,000	293,000	2,637,000	-
	선택 ②	- 거실, 주방 아트월 : 유럽산 세라믹타일, 공용 프리미엄 벽지 - 안방, 침실1, 침실2 : 프리미엄 벽지 (디아방)	1,650,000	165,000	1,485,000	-
102	선택 ①	- 거실, 주방 아트월 : 유럽산 세라믹타일, 공용 시트판넬 - 안방, 침실1, 침실2 : 프리미엄 벽지 (디아방)	3,510,000	351,000	3,159,000	-
	선택 ②	- 거실, 주방 아트월 : 유럽산 세라믹타일, 공용 프리미엄 벽지 - 안방, 침실1, 침실2 : 프리미엄 벽지 (디아방)	1,570,000	157,000	1,413,000	-
112	선택 ①	- 거실 아트월 : 유럽산 세라믹타일, 공용 시트판넬 - 안방, 침실1, 침실2, 알파룸 : 프리미엄 벽지 (디아방)	2,630,000	263,000	2,367,000	-
	선택 ②	- 거실 아트월 : 유럽산 세라믹타일, 공용 프리미엄 벽지 - 안방, 침실1, 침실2, 알파룸 : 프리미엄 벽지 (디아방)	990,000	99,000	891,000	-
120	선택 ①	- 거실 아트월 : 유럽산 세라믹타일, 공용 시트판넬 - 안방, 침실1, 침실2 : 프리미엄 벽지 (디아방)	2,670,000	267,000	2,403,000	-
	선택 ②	- 거실 아트월 : 유럽산 세라믹타일, 공용 프리미엄 벽지 - 안방, 침실1, 침실2 : 프리미엄 벽지 (디아방)	1,010,000	101,000	909,000	-

- 벽 마감 특화 옵션 미선택 시 거실 아트월은 600×1,200 타일, 복도 및 공용공간과 침실은 실크벽지로 시공됩니다.
- 옵션 1 선택 시 거실 아트월 및 주방 벽면에 대형 세라믹 타일, 복도 및 공용공간에 시트판넬, 침실에 프리미엄 벽지(디아망)가 적용됩니다.
- 옵션 2 선택 시 거실 아트월 및 주방 벽면에 대형 세라믹 타일, 복도·공용공간 및 침실에 프리미엄 벽지(디아망)가 적용됩니다.
-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벽체 마감의 재료, 두께 및 마감 상세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접 마감재 및 가구 등의 설치 위치와 마감 형태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라믹 타일은 자재 특성 및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해 분절 시공되며, 자재의 색상, 패턴 및 타일 나누기는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84E, 84F 타입은 와이드 거실형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상기 유상옵션 금액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주방 마감 특화

약식표기 (타입)	선택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비고
				계약 시	입주지정일	
84A	선택 ①	- 주방 벽,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및 고급형 주방수전 (주방 수납 특화 미선택 시)	2,390,000	239,000	2,151,000	-
	선택 ②	- 주방 벽,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및 고급형 주방수전 (주방 수납 특화 선택 시)	2,800,000	280,000	2,520,000	-
84B	선택 ①	- 주방 벽,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및 고급형 주방수전 (주방 수납 특화 미선택 시)	2,280,000	228,000	2,052,000	-
	선택 ②	- 주방 벽,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및 고급형 주방수전 (주방 수납 특화 선택 시)	2,680,000	268,000	2,412,000	-
84C	선택 ①	- 주방 벽,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및 고급형 주방수전 (주방 수납 특화 미선택 시)	2,380,000	238,000	2,142,000	-
	선택 ②	- 주방 벽,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및 고급형 주방수전 (주방 수납 특화 선택 시)	3,040,000	304,000	2,736,000	-
84D	선택 ①	- 주방 벽,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및 고급형 주방수전 (주방 수납 특화 미선택 시)	2,250,000	225,000	2,025,000	-
	선택 ②	- 주방 벽,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및 고급형 주방수전 (주방 수납 특화 선택 시)	2,910,000	291,000	2,619,000	-
84E	선택 ①	- 주방 벽,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및 고급형 주방수전 (주방 수납 특화 미선택 시)	2,340,000	234,000	2,106,000	-
	선택 ②	- 주방 벽,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및 고급형 주방수전 (주방 수납 특화 선택 시)	2,860,000	286,000	2,574,000	-
84F	선택 ①	- 주방 벽,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및 고급형 주방수전 (주방 수납 특화 미선택 시)	2,370,000	237,000	2,133,000	-
	선택 ②	- 주방 벽,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및 고급형 주방수전 (주방 수납 특화 선택 시)	2,890,000	289,000	2,601,000	-
84G	선택 ①	- 주방 벽,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및 고급형 주방수전 (주방 수납 특화 미선택 시)	2,870,000	287,000	2,583,000	-
	선택 ②	- 주방 벽,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및 고급형 주방수전 (주방 수납 특화 선택 시)	3,530,000	353,000	3,177,000	-
102	선택 ①	- 주방 벽,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및 고급형 주방수전 (주방 수납 특화 미선택 시)	2,220,000	222,000	1,998,000	-
	선택 ②	- 주방 벽,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및 고급형 주방수전 (주방 수납 특화 선택 시)	2,900,000	290,000	2,610,000	-
112	선택 ①	- 주방 벽,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및 고급형 주방수전 (주방 수납 특화 미선택 시)	2,160,000	216,000	1,944,000	-
	선택 ②	- 주방 벽,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및 고급형 주방수전 (주방 수납 특화 선택 시)	2,810,000	281,000	2,529,000	-
120	선택 ①	- 주방 벽,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및 고급형 주방수전 (주방 수납 특화 미선택 시)	2,130,000	213,000	1,917,000	-
	선택 ②	- 주방 벽,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및 고급형 주방수전 (주방 수납 특화 선택 시)	2,640,000	264,000	2,376,000	-

- 주방 마감 특화 옵션 미선택 시 인조대리석 주방 상판, 300×600 도기질 벽타일 및 기본형 주방수전이 적용됩니다.
- 엔지니어드스톤은 재료의 물성에 따라 이음매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분공사 시 엔지니어드스톤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택①은 확장 기본형 주방 레이아웃을 유지하며, 주방 벽·상판이 엔지니어드스톤으로, 주방수전이 고급형으로 변경됩니다.
- 선택②는 주방 수납특화(대형 아일랜드) 선택 시 주방 벽·상판 및 아일랜드 상판 측면에 엔지니어드스톤이 적용되며, 주방수전이 고급형으로 변경됩니다.
-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주방 레이아웃, 가구 구성 및 규격, 상판 및 벽체 마감 상세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드스톤은 자재 특성 및 시공 여건에 따라 이음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색상 및 패턴 등이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 마감특화 옵션 선택 시 하부장 상판 하부에 간접조명이 설치되며, 스위치는 하부장 내부에 설치됩니다.

주방 수납 특화

약식표기 (타입)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비고
			계약 시	입주지정일	
84A, 84B	주방 대형 아일랜드, 주방상판 매립 콘센트	2,180,000	218,000	1,962,000	-
84C, 84D	주방 대형 아일랜드, 주방상판 매립 콘센트	2,740,000	274,000	2,466,000	-
84E, 84F	주방 대형 아일랜드, 주방상판 매립 콘센트	1,830,000	183,000	1,647,000	-
84G, 102, 112	주방 대형 아일랜드, 주방상판 매립 콘센트	2,750,000	275,000	2,475,000	-
120	주방 대형 아일랜드, 주방상판 매립 콘센트	2,200,000	220,000	1,980,000	-
	주방장식장	2,700,000	270,000	2,430,000	-

- 대형 아일랜드 수납특화 선택 시 기본형 주방 레이아웃이 양면 수납형 대형 아일랜드로 변경되며, 거실 측 조명형 유리장식장과 상판 매립형 콘센트가 적용됩니다.
- 대형 아일랜드의 규격 및 가구 구성은 주택형별 평면 및 공간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 마감 특화 옵션2는 대형 아일랜드 수납 특화와 연계하여 선택 가능하며, 선택 시 대형 아일랜드에 맞춰 주방 마감 구성이 변경됩니다.
- 120타입 주방 장식장 특화 선택시 기본형 키 큰 수납장이 조명형 유리 키 큰 장식장.상부장, 외산 텐덤서랍이 적용된 하부장으로 변경되며, 상판과 벽면은 엔지니어드스톤으로 마감됩니다.

주방 외 수납 특화

약식표기 (타입)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비고
			계약 시	입주지정일	
84A, 84B, 84C, 84D, 84E, 84F, 84G, 102, 112	침실2 불박이장	970,000	97,000	873,000	-
120	침실2 불박이장	1,180,000	118,000	1,062,000	-
84A, 84C, 84E, 84G, 102	안방 불박이장	3,180,000	318,000	2,862,000	-
102	주방 팬트리 (시스템 수납 포함)	1,580,000	158,000	1,422,000	-
84C, 84D	주방 팬트리 원슬라이딩 유리도어	120,000	12,000	108,000	-
102	복도 팬트리 (시스템 수납 포함)	900,000	90,000	810,000	-
84E, 84F	복도 팬트리 (시스템 수납 포함)	1,560,000	156,000	1,404,000	-
84E, 84F	복도 팬트리 (시스템 수납 포함) + 침실2 팬트리 (시스템 수납 포함)	2,040,000	204,000	1,836,000	-
84E, 84F	와이드 거실	-	-	-	무상선택

- 84C-84D타입 주방 팬트리 도어특화 선택 시 기본형 가구 도어가 원슬라이딩 유리 도어로 변경되며, 선택 여부에 따라 출입구 형태 및 가구 마감 상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침실2 불박이장은 전 타입에서 선택 가능하며, 타입별 침실 크기 및 평면에 따라 규격과 구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방 불박이장은 설치 가능한 평면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며, 평면 구성에 따라 불박이장의 규격 및 설치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102타입은 주방 팬트리 특화 선택 시 침실3이 팬트리 공간으로 변경되며, 이에 따라 침실3의 기능 및 공간 구성이 변경됩니다.
- 84E, 84F타입 알파룸은 복도 팬트리형 또는 복도 팬트리+침실2 드레스룸형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 84E, 84F타입 복도 팬트리 옵션 선택시 온도조절기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102타입 주방 팬트리 옵션 선택시 온도조절기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84E, 84F타입은 알파룸을 와이드 거실형으로 무상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 시 벽체 구성과 천장 및 우물천장의 형태가 변경됩니다.
- 84E, 84F타입은 벽마감 특화와 알파룸을 수납형을 함께 선택할 경우, 알파룸에 프리미엄 벽지(디아밍) 대신 일반 팬트리 벽지가 적용됩니다.

안방 특화

약식표기 (타입)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비고
			계약 시	입주지정일	
84A, 84C, 84E, 84G	안방 고급형 드레스룸 (벽판넬형 시스템가구), 포켓 슬라이딩 유리도어	3,150,000	315,000	2,835,000	-
102	안방 고급형 드레스룸 (벽판넬형 시스템가구), 원슬라이딩 유리도어	3,310,000	331,000	2,979,000	-
112	안방 고급형 드레스룸 (벽판넬형 시스템가구), 원슬라이딩 유리도어	9,530,000	953,000	8,577,000	-
120	[마스터 라운지 특화] 안방 드레스룸 (기본 시스템가구), 침실3 드레스룸 (고급 벽판넬형 시스템가구)	11,690,000	1,169,000	10,521,000	-
84B, 84D, 84F	[알파룸 옵션 선택시 선택 가능] 안방 고급형 드레스룸 (벽판넬형 시스템가구)	3,450,000	345,000	3,105,000	-
84B, 84D, 84F	[알파룸 옵션 ①] 룸인룸 (공간 제공)	400,000	40,000	360,000	-
	[알파룸 옵션 ②] 대형 고급형 드레스룸 (벽판넬형 시스템가구)	5,110,000	511,000	4,599,000	-
	[알파룸 옵션 ③] 키즈룸형 가구	2,420,000	242,000	2,178,000	-
	[알파룸 옵션 ④] 서재형 가구	2,420,000	242,000	2,178,000	-

- 안방 특화는 주택형 및 평면에 따라 선택 가능한 품목과 구성이 상이하며, 해당 평면에 적용 가능한 옵션에 한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안방 특화 선택시 드레스룸 천장에는 멀티 다운라이트가 적용됩니다.
- 고급형 드레스룸에는 조명 선반이 적용된 벽판넬형 시스템가구와 시스템 파우더장이 설치됩니다.
- 포켓 슬라이딩도어의 경우 상부 레일과 하단 마감캡 상세 및 하드웨어가 변경될 수 있으며, 포켓집 내 비마감면이 일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안방 고급형 드레스룸 선택 시 적용되는 유리도어는 대형타입과 일반타입에 따라 형태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84B, 84D, 84F 알파룸 옵션 선택시 안방 레이아웃 변경에 따라 드레스룸 및 파우더 위치가 변경되며, 포켓 유리 슬라이딩 도어와 드레스룸과 파우더장 사이 벽면은 가구판넬 마감이 적용됩니다.
- 84B, 84D, 84F 알파룸 옵션 선택시 선택 가능한 고급형 드레스룸 미선택시 기본 시스템가구 선반의 드레스룸과 조명형 파우더장이 설치됩니다.
- 120 마스터 라운지 특화 선택 시 기존 안방 드레스룸과 침실3의 레이아웃이 조정되며, 고급 벽판넬형 시스템가구가 적용된 마스터 드레스룸과 복도 장식장이 구성됩니다.
- 포켓 슬라이딩 유리 도어, 원슬라이딩 유리도어의 구성품 중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옵션 선택시 설치되는 유리도어는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차단의 목적에 한해 설치됩니다.
-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포켓 슬라이딩 유리도어, 원슬라이딩 유리도어는 본 공사 시 제조사 및 규격,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84B, 84D, 84F 알파룸 옵션 선택시 알파룸에 온도조절기가 추가 설치되며, 옵션 미선택시 안방 외 별도 온도조절기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 마감 특화

약식표기 (타입)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비고
			계약 시	입주지정일	
84A, 84B, 84C, 84D, 84E, 84F, 84G, 102, 112	욕실1, 욕실2 수전 및 ACC, 샤워부스 색상특화 및 비데일체형 양변기 + 욕실1 세면대 일체형 하부장	3,040,000	304,000	2,736,000	-
120	욕실1, 욕실2 수전 및 ACC, 샤워부스 색상특화 및 비데일체형 양변기 + 욕실1 세면대 일체형 하부장	3,270,000	327,000	2,943,000	-

- 욕실 스타일업 옵션 미선택시 공용욕실에는 투피스양변기 및 반다리 세면기가 설치되며, 부부욕실에는 언더볼 세면기 및 원피스 양변기, 비데, 기본형 샤워부스가 설치됩니다.

■ 조명 특화

약식표기 (타입)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비고
			계약 시	입주지정일	
84A	- 거실, 주방 우물천장 직간접 감성 라인 조명 - 복도 고급 원형 매입등 - 안방, 침실 고급 직부등 - 드레스룸 멀티 다운라이트 - 거실, 안방, 침실 커튼박스 간접등 (4,000K)	8,640,000	864,000	7,776,000	-
84B, 84C, 84D, 84G	- 거실, 주방 우물천장 직간접 감성 라인 조명 - 복도 고급 원형 매입등 - 안방, 침실 고급 직부등 - 드레스룸 멀티 다운라이트 - 거실, 안방, 침실 커튼박스 간접등 (4,000K)	8,110,000	811,000	7,299,000	-
102	-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 감성 라인 조명 - 주방, 복도 고급 원형 매입등 - 고급 식탁조명 - 안방, 침실 고급 직부등 - 드레스룸 멀티 다운라이트 - 거실, 안방, 침실 커튼박스 간접등 (4,000K)	7,120,000	712,000	6,408,000	-
112	- 거실, 주방 우물천장 직간접 감성 라인 조명 - 복도 고급 원형 매입등 - 안방, 침실 고급 직부등 - 드레스룸 멀티 다운라이트 - 거실, 안방, 침실 커튼박스 간접등 (4,000K)	9,820,000	982,000	8,838,000	-
120	- 거실, 주방, 안방 우물천장 직간접 감성 라인 조명 - 안방, 복도 고급 원형 매입등 - 안방, 침실 고급 직부등 - 거실, 안방, 침실 커튼박스 간접등 (4,000K)	9,600,000	960,000	8,640,000	-
84E, 84F	선택 ① (와이드형 미선택 시) - 거실, 주방 우물천장 직간접 감성 라인 조명 - 복도 고급 원형 매입등 - 안방, 침실 고급 직부등 - 드레스룸 멀티 다운라이트 - 거실, 안방, 침실 커튼박스 간접등 (4,000K)	7,800,000	780,000	7,020,000	-
	선택 ② (와이드형 선택 시) - 거실, 주방 우물천장 직간접 감성 라인 조명 - 복도 고급 원형 매입등 - 안방, 침실 고급 직부등 - 드레스룸 멀티 다운라이트 - 거실, 안방, 침실 커튼박스 간접등 (4,000K)	8,820,000	882,000	7,938,000	-

- 조명 특화 선택시 주방 후드장에 조명기구 SMPS함이 설치되어 수납이 불가 합니다.
- 거실 실링팬은 조명 특화 옵션 선택시 추가로 선택 가능한 별도 옵션 항목입니다.
- 드레스룸 멀티 다운라이트는 확장 기본평면 기준으로 반영되며, 드레스룸 별도 옵션에 따른 조명기구 추가는 별도 옵션 항목입니다.
- 침실 커튼박스 간접조명은 침실 옵션 선택으로 드레스룸/펜트리 등으로 평면 변경시 설치 되지 않습니다.

■ 가전 특화

약식표기 (타입)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비고
			계약 시	입주지정일	
84A, 84B, 84C, 84D, 84E, 84F, 84G, 102, 112	빌트인 냉장고 [1도어형 디자인 냉장고(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특화 수납장]	5,200,000	520,000	4,680,000	LG
120	빌트인 냉장고 [1도어형 디자인 냉장고(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4,800,000	480,000	4,320,000	LG
84A, 84B, 84C, 84D, 84E, 84F, 84G, 102, 112, 120	빌트인 3구 인덕션 (화이트 상판)	1,000,000	100,000	900,000	LG
	빌트인 식기세척기 (가구도어형)	1,400,000	140,000	1,260,000	LG
	주방TV (13인치)	500,000	50,000	450,000	-
	욕실 복합 환기팬 (욕실1, 2)	1,100,000	110,000	990,000	휴젠뜨
	거실 실랑팬 52인치 (조명 특화 선택 시)	400,000	40,000	360,000	쿠쿠

- 옵션 가전은 전용 모델로 시중 판매 제품과 외형은 유사할 수 있으나, 내부 사양 및 일부 기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빌트인 가전은 제품 설치 및 원활한 환기를 위해 제품과 가구 사이에 일정한 여유공간을 두고 설치되며, 제품과 가구가 밀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도어형 냉장고 SET 설치 공간은 옵션 제품의 규격을 기준으로 계획되며, 별도 구매 제품은 규격에 따라 설치가 제한될 수 있고 제품별 돌출 정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도어형 냉장고 SET의 설치 위치 및 도어 열림 방향은 세대 배치 및 지정된 제품 구성에 따라 적용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 선택 시 특화 수납장에 외산 탠덤서랍이 적용되어 수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 기본형 냉장고장과 빌트인 냉장고장은 각 기기 규격에 맞춰 설계되어 내부 유효폭이 서로 다르며, 설치 공간 확보를 위해 주변 수납장 및 케이싱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식기세척기 선택 시 해당 위치의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 구성이 변경되며, 제품 설치를 위한 급·배수 및 전기설비가 적용됩니다.
- 인덕션 선택 시 기본 제공되는 3구 쿡탑을 대신하여 인덕션이 설치됩니다.
- 기본 가스쿡탑 적용 시 주방 상판에 가스배관 인출홀 타공 및 유사색 캡이 시공되며, 인덕션 옵션 선택 시 상판 타공은 미시공됩니다.
- 13인치 주방TV는 유상옵션 선택 시에만 설치되며, 미선택 시 해당 제품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거실 실랑팬 옵션은 조명 특화 옵션 선택시에만 선택 가능하며, 실랑팬 미선택 시 천장 내부 보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빌트인 인덕션 옵션 선택시 가스 배관은 세대 가스 계량기가 설치된 장소까지 제공됩니다. 이 경우 가스 쿡탑의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 복합환기팬 옵션 선택시 일반 욕실 고정압 팬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 복합환기팬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위치 및 방향이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가 선택품목II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 제조사 LG전자)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프리미엄형 (기본)

약식표기 (타입)	품목	옵션	대수	설치위치	공급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계약 시	입주지정일
84A, 84C, 84G	기본	선택 ①	3대	거실+주방+안방	5,900,000	590,000	5,310,000
	전실	선택 ②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8,500,000	850,000	7,650,000
84B, 84D	기본	선택 ①	3대	거실+주방+안방	5,900,000	590,000	5,310,000
	전실	선택 ②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8,500,000	850,000	7,650,000
	전실+안방특화	선택 ③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9,900,000	990,000	8,910,000
84E	기본	선택 ①	3대	거실+주방+안방	5,900,000	590,000	5,310,000
	전실	선택 ②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8,500,000	850,000	7,650,000
	전실+와이드거실	선택 ③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와이드거실)	9,900,000	990,000	8,910,000
84F	기본	선택 ①	3대	거실+주방+안방	5,900,000	590,000	5,310,000
	전실	선택 ②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8,500,000	850,000	7,650,000
	전실+와이드거실	선택 ③-1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와이드거실)	9,900,000	990,000	8,910,000
	전실+안방특화	선택 ③-2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안방특화	9,900,000	990,000	8,910,000
	전실+와이드거실 +알파룸	선택 ④	7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와이드거실) +안방특화	12,100,000	1,210,000	10,890,000
102	기본	선택 ①	3대	거실+주방+안방	6,100,000	610,000	5,490,000
	전실	선택 ②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9,900,000	990,000	8,910,000
	전실 +주방 팬트리	선택 ③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8,500,000	850,000	7,650,000
112	기본	선택 ①	3대	거실+주방+안방	6,100,000	610,000	5,490,000
	전실	선택 ②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9,900,000	990,000	8,910,000
	전실+드레스룸	선택 ③	7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드레스룸	12,100,000	1,210,000	10,890,000
120	기본	선택 ①	3대	거실+주방+안방	6,100,000	610,000	5,490,000
	전실	선택 ②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9,900,000	990,000	8,910,000
	전실 +마스터 라운지	선택 ③-1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마스터라운지	9,900,000	990,000	8,910,000
	전실 +마스터 라운지	선택 ③-2	7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마스터 드레스룸+마스터라운지	12,100,000	1,210,000	10,890,000

■ 프리미엄형 (UV+AI인공지능형)

약식표기 (타입)	품목	옵션	대수	설치위치	공급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계약 시	입주자정일
84A, 84C, 84G	기본	선택 ①	3대	거실+주방+안방	6,900,000	690,000	6,210,000
	전실	선택 ②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9,900,000	990,000	8,910,000
84B, 84D	기본	선택 ①	3대	거실+주방+안방	6,900,000	690,000	6,210,000
	전실	선택 ②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9,900,000	990,000	8,910,000
	전실+안방특화	선택 ③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11,800,000	1,180,000	10,620,000
84E	기본	선택 ①	3대	거실+주방+안방	6,900,000	690,000	6,210,000
	전실	선택 ②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9,900,000	990,000	8,910,000
	전실+와이드거실	선택 ③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와이드거실)	11,800,000	1,180,000	10,620,000
84F	기본	선택 ①	3대	거실+주방+안방	6,900,000	690,000	6,210,000
	전실	선택 ②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9,900,000	990,000	8,910,000
	전실+와이드거실	선택 ③-1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와이드거실)	11,800,000	1,180,000	10,620,000
	전실+안방특화	선택 ③-2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안방특화	11,800,000	1,180,000	10,620,000
	전실+와이드거실 +알파룸	선택 ④	7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와이드거실) +안방특화	14,500,000	1,450,000	13,050,000
102	기본	선택 ①	3대	거실+주방+안방	7,300,000	730,000	6,570,000
	전실	선택 ②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11,800,000	1,180,000	10,620,000
	전실 +주방 팬트리	선택 ③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9,900,000	990,000	8,910,000
112	기본	선택 ①	3대	거실+주방+안방	7,300,000	730,000	6,570,000
	전실	선택 ②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11,800,000	1,180,000	10,620,000
	전실+드레스룸	선택 ③	7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드레스룸	14,500,000	1,450,000	13,050,000
120	기본	선택 ①	3대	거실+주방+안방	7,300,000	730,000	6,570,000
	전실	선택 ②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11,800,000	1,180,000	10,620,000
	전실 +마스터 라운지	선택 ③-1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마스터라운지	11,800,000	1,180,000	10,620,000
	전실 +마스터 라운지	선택 ③-2	7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마스터 드레스룸+마스터라운지	14,500,000	1,450,000	13,050,000

- 상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금액은 본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구조, 실내기 선택 수량, 운전 조건 또는 실내 환경 등에 따라 냉방 사각지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단위세대 에어컨의 냉매 및 응축수 배관배관은 기본 타입(거실, 안방)으로 설치되며, 추가 선택품목II(천장형 시스템에어컨)를 선택한 세대는 별도 배관배관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중복 설치되어 있더라도 하자 보증하지 않습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상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 및 단열재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추후 유선리모컨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금액의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금액은 아파트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계약조건(납부금액 또는 납부일정, 계약체결 일정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지정, 마감재 색상, 디자인, 조명 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금액은 아파트 공급계약의 부수되는 마감공사로서 소요자재를 선 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계약 이후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시 원상복구, 변경공사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견본주택에 전시(일부 또는 전체)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행사 시 세부 사양 등 상세 내용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분양대금, 발코니 확장, 추가 선택품목 (유상옵션,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금융기관명
분양대금	계약금 (5%), 중도금 (60%), 잔금 (35%)	1013-01-6418517	신영부동산신탁(주)	전북은행
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금융기관명
발코니 확장	계약금 (10%), 잔금 (90%)	1013-01-6418404	신영부동산신탁(주)	전북은행
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금융기관명
추가 선택품목 (유상옵션)	계약금 (10%), 잔금 (90%)	1013-01-6418404	신영부동산신탁(주)	전북은행
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금융기관명
추가 선택품목II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계약금 (10%), 잔금 (90%)	1013-01-6418404	신영부동산신탁(주)	전북은행

- 분양대금, 발코니 확장대금, 추가 선택품목, 추가 선택품목II대금은 반드시 상기 예금주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 추가 선택품목, 추가 선택품목II 납부계좌는 서로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그 효력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납부예정일의 변동(연기 등)이 있을 경우, 시공사는 계약자에게 문자 또는 우편물 등으로 통보하며, 이는 고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신여부에 대해 책임 없습니다)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	20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0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tr><th colspan="2">구분</th><th>처리방법</th></tr><tr><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tr><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tr><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td>모두 부적격 처리</td></tr></table>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簿 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 :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 85㎡ 이하 주택형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 85㎡ 이하 주택형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table><tr><th colspan="4">[청약예금의 예치금액]</th></tr><tr><th>구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tr><td>모든 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태아 및 입양 요건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 - 임신(태아)을 인정받기 위한 청약신청자는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임신 관련 자료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출산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를 확인합니다. -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32 세대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

-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②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경과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확정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정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기관

구분		해당기관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국가보훈부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과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경기도청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청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인천광역시청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통일부 하나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기준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 만 가능합니다.)

구분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시 발급유의사항
공통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청약자	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청약자의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청약자의 혼인·이혼 이력과 모든 가족관계 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접수 불가) / 용도 : 당첨자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본인 발급분)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모바일 신분증 불가)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추가서류 (해당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외 필요 소명서류	해당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복무확인서,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접수 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당첨자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본인 발급분)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모바일 신분증 불가)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건보주택 방문 청약신청자(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는 청약 신청 시에 상기 서류 및 청약통장 가입확인서[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불필요]를 포함하여 제출해야하며,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정부24 온라인인감증명서 제출 시 발급용도 및 제출처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발급용도 : 당첨자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 제출처 : 화성 향남 롯데캐슬 시그니처)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통/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적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는 기본 자격확인서류 외 추가의 별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51 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②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경과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③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또는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기준 [① 지역 ▶ ② 배점기준표 ▶ ③ 미성년 자녀수 ▶ ④ 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 추첨]

- ① 지역 : 해당시·도 거주자(화성시 및 경기도) 50%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50%
 -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5조에 의거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해당시·도 거주자(화성시 및 경기도)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우선공급 낙첨자,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에게 공급합니다.
 - * 단, 해당시·도에서 경쟁 발생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선정하며 우선공급 낙첨자가 기타지역 거주자와 재경쟁 시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②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
- ③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 ④ 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⑤ 추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①	미성년 자녀수	40	4명 이상	40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②	영유아 자녀수	15	3명 이상	15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 (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③	세대구성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한부모 가족	5	
④	무주택 기간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합니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⑤	해당 시·도 거주기간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⑥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단, 청약저축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①, ②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 ③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 가족증명서로 확인
- ③, ④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 ④, ⑤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 ⑥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자녀기준

- 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 임신·입양 :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 만 가능합니다.)

구분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유의사항
공통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청약자	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청약자의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청약자의 혼인·이혼 이력과 모든 가족관계 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생년월일부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고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접수 불가) / 용도 : 당첨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본인 발급분)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모바일 신분증 불가)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추가서류 (해당자)	한부모가족증명서	청약자	성평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기존주택처분 관련 서약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서약서 (별지 제6호 서식, 출산특례 해당자)
	임신증명서류 (임신진단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출산증명서 또는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 제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3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자녀가 만 18세로 미성년이며, 미혼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그 외 필요 소명서류	해당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복무확인서,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접수 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당첨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본인 발급분)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모바일 신분증 불가)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건본주택 방문 청약신청자(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는 청약 신청 시에 상기 서류 및 청약통장 가입확인서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정부24 온라인인감증명서 제출 시 발급용도 및 제출처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발급용도 : 당첨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 제출처 : 화성 향남 롯데캐슬 시그니처)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의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로 제출 불가합니다.

※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 상(단신부임) 해외체류(계속하여 90일 초과) 중일 경우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유학, 연수(근로 및 파견 목적 제외),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시 생업사정 불인정 됩니다. (해외에서 발급 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통/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한 장기복무 군인(10년 이상)은 계약체결 전 군복무기간이 명시된 복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적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는 기본 자격확인서류 외 추가의 별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5% 범위) : 199 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②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경과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③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④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기준 : [① 소득구분 ▶ ② 순위 ▶ ③ 지역 ▶ ④ 미성년 자녀수 ▶ ⑤ 추첨]

① 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우선공급 (5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하여야 합니다.
2단계	일반공급 (2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하여야 합니다.
3단계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3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 없이 해당지역 거주자(화성시)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② 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③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화성시) ▶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④ 미성년 자녀수

⑤ 추첨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② 순위 판단 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 가능합니다.
- ④ 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 임신·입양 :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합니다.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확인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0.21.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단위 : 원)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 7,533,763	~ 8,802,202	~ 9,326,985	~ 9,906,263	~ 10,485,541	~ 11,064,819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 9,040,516	~ 10,562,642	~ 11,192,382	~ 11,887,516	~ 12,582,649	~ 13,277,783
일반공급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 140% 이하	7,533,764 ~ 10,547,268	8,802,203 ~ 12,323,083	9,326,986 ~ 13,057,779	9,906,264 ~ 13,868,768	10,485,542 ~ 14,679,757	11,064,820 ~ 15,490,747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 160% 이하	9,040,517 ~ 12,054,021	10,562,643 ~ 14,083,523	11,192,383 ~ 14,923,176	11,887,517 ~ 15,850,021	12,582,650 ~ 16,776,866	13,277,784 ~ 17,703,710
추첨공급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547,269 ~	12,323,084 ~	13,057,780 ~	13,868,769 ~	14,679,758 ~	15,490,748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 ~	14,083,524 ~	14,923,177 ~	15,850,022 ~	16,776,867 ~	17,703,711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가구원수 산정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근로자 월평균소득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 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
사업자 월평균소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구분	금액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 3,100만원 이하	건 축 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 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전체 세대원 제출)

해당 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전체 세대원 (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 포함)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산정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전체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정부24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 세무서(홈택스)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연봉계약서의 총급여를 월할계산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① 해당 직장 ② 세무서(홈택스)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명	① 세무서(홈택스) ② 세무서(홈택스)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명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①/② 세무서(홈택스)
	법인대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재무제표 ③ 재직증명서 ④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⑤ 사업자등록증명 ⑥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① ~ ④ 해당 직장 ⑤ 세무서 ⑥ 등기소
프리랜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행정복지센터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① 세무서 / 해당 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② 사실증명 (신고사실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하고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① 견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홈택스) * 상기 내용 참조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부동산 소유현황 입증서류 (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청약자 및 전체 세대원 제출)

해당 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및 발급처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 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해당자	① 아래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 ☎ 행정복지센터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 ☎ 행정복지센터 -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 서울시 : 'ETAX(etax.seoul.go.kr)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 외 건물 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서울시 외 : '위택스(www.wetax.co.kr)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 농지대장 / ☎ 행정복지센터 - 축산업 허가증 / ☎ 지자체 축산과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토지이음 (www.eum.go.kr)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 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전국단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 행정복지센터

- ※ 부동산 소유현황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를 하여 전체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 상기 부동산 소유현황 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 만 가능합니다.)

구분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유의사항
공통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청약자	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청약자의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청약자의 혼인·이혼 이력과 모든 가족관계 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생년월일부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고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접수 불가) / 용도 : 당첨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본인 발급분)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모바일 신분증 불가)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소득증빙서류	청약자 및 세대원	국민건강보험 자격실확인서 및 소득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추가서류 (해당자)	기존주택처분 관련 서약서	청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서약서 (별지 제6호 서식, 출산특례 해당자)
	임신증명서류 (임신진단서)	청약자	출산증명서 또는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 제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배우자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부동산 소유현황 입증서류	청약자 및 세대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가구원수에 포함하기 위한 경우
대리인 접수 시	그 외 필요 소명서류	해당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복무확인서,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당첨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본인 발급분)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모바일 신분증 불가)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 건본주택 방문 청약신청자(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는 청약 신청 시에 상기 서류 및 청약통장 가입확인서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정부24 온라인인감증명서 제출 시 발급용도 및 제출처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발급용도 : 당첨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 제출처 : 화성 향남 롯데캐슬 시그니처)
- ※ 부동산 소유현황 발급처 : 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주민등록번호 공개체크)
-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의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로 제출 불가합니다.
- ※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 상(단신부임) 해외체류(계속하여 90일 초과) 중일 경우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 유학, 연수(근로 및 파견 목적 제외),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시 생업사정 불인정 됩니다. (해외에서 발급 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통/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한 장기복무 군인(10년 이상)은 계약체결 전 군복무기간이 명시된 복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적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는 기본 자격확인서류 외 추가의 별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세대수의 3% 범위) : 46 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②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 경과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④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분 (※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세대원을 직계존속으로 부양가족수에 포함할 경우, 배우자는 해당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기준 [① 지역 ▶ ② 가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 추첨]

-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화성시) ▶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② 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순위가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단, 청약저축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추첨

가점 산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 만 가능합니다.)

구분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유의사항
공통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청약자	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청약자의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청약자의 혼인·이혼 이력과 모든 가족관계 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생년월일부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고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접수 불가) / 용도 : 당첨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본인 발급분)
	신분증	직계존속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모바일 신분증 불가)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의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직계존속 및 무주택세대구성원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추가서류 (해당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과거 3년간의 내역
	기존주택처분 관련 서약서	청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 (별지 제6호서식, 출산특례 해당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직계존속이 존재하거나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직계비속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과거 1년 간의 내역
대리인 접수 시	그 외 필요 소명서류	해당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복무확인서,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당첨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본인 발급분)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모바일 신분증 불가)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 건본주택 방문 청약신청자(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는 청약 신청 시에 상기 서류 및 청약통장 가입확인서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정부24 온라인인감증명서 제출 시 발급용도 및 제출처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발급용도 : 당첨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 제출처 : 화성 향남 롯데캐슬 시그니처)
-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는 [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가 가입되어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지능력 상실 등의 사유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발급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공적 서류(ex. 장기요양인정서 등) 및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급하는 “병·의원&약국별 기본진료내역”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 ※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 상(단신부임) 해외체류(계속하여 90일 초과) 중일 경우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 유학, 연수(근로 및 파견 목적 제외),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시 생업사정 불인정 됩니다. (해외에서 발급 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통/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한 장기복무 군인(10년 이상)은 계약체결 전 군복무기간이 명시된 복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적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는 기본 자격확인서류 외 추가의 별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7% 범위) : 91 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②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 경과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④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 예외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⑤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또는 1인 가구
 - 미혼인 자녀 : 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
 -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는 추천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됩니다.
 -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금회 60㎡ 이하 주택형 공급이 없으므로 '단독세대'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⑥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⑦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를 납부한 분을 포함합니다.
 -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소득세 납부내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하며, 특히,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합니다.
- ※ 단,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실적은 청약신청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만 인정하며, 그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납부실적은 불가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기준 : [① 소득구분 ▶ ② 지역 ▶ ③ 추천]

① 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우선공급 (5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일반공급 (2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추천 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②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화성시) ▶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③ 추천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녀기준

- 임신·입양 :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합니다.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확인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0.21.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단위 : 원)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 9,793,892	~ 11,442,863	~ 12,125,081	~ 12,878,142	~ 13,631,203	~ 14,384,265
일반공급		130% 초과 ~ 160% 이하	9,793,893 ~ 12,054,021	11,442,864 ~ 14,083,523	12,125,082 ~ 14,923,176	12,878,143 ~ 15,850,021	13,631,204 ~ 16,776,866	14,384,266 ~ 17,703,710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 ~	14,083,524 ~	14,923,177 ~	15,850,022 ~	16,776,867 ~	17,703,711 ~
	1인 가구	160% 이하	~ 12,054,021	~ 14,083,523	~ 14,923,176	~ 15,850,021	~ 16,776,866	~ 17,703,710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 ~	14,083,524 ~	14,923,177 ~	15,850,022 ~	16,776,867 ~	17,703,711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가구원수 산정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근로자 월평균소득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 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
사업자 월평균소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구분	금액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 3,100만원 이하	건 축 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 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확인사항 및 발급처
공통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해당하는 서류	①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홈택스)] ②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세무서(홈택스)] ③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직장] ④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해당 직장 / 세무서(홈택스)]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해당 직장] ②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세무서(홈택스)] ②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로 과거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	상기 공통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해당하는 서류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해당년도 모두)하여야 합니다.

※ 청약 당해연도를 포함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예시) 2015, 2018, 2022, 2023, 2025년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전체 세대원 제출)

해당 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전체 세대원 (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 포함)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산정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전체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정부24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 세무서(홈택스)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연봉계약서의 총급여를 월할계산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① 해당 직장 ② 세무서(홈택스)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명	① 세무서(홈택스) ② 세무서(홈택스)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명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①/② 세무서(홈택스)
	법인대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재무제표 ③ 재직증명서 ④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⑤ 사업자등록증명 ⑥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① ~ ④ 해당 직장 ⑤ 세무서 ⑥ 등기소
프리랜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행정복지센터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① 세무서 / 해당 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② 사실증명 (신고사실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하고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① 견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홈택스) * 상기 내용 참조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부동산 소유현황 입증서류 (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청약자 및 전체 세대원 제출)

해당 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및 발급처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 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해당자	① 아래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 ☎ 행정복지센터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 ☎ 행정복지센터 -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 서울시 : 'ETAX(etax.seoul.go.kr)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 외 건물 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서울시 외 : '위택스(www.wetax.co.kr)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 농지대장 / ☎ 행정복지센터 - 축산업 허가증 / ☎ 지자체 축산과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토지이음 (www.eum.go.kr)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 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전국단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 행정복지센터

※ 부동산 소유현황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를하여 전체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상기 부동산 소유현황 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 만 가능합니다.)

구분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유의사항
공통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청약자	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청약자의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청약자의 혼인·이혼 이력과 모든 가족관계 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생년월일부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고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접수 불가) / 용도 : 당첨자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본인 발급분)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모바일 신분증 불가)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청약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추가서류 (해당자)	소득증빙서류	청약자 및 세대원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소득을 입증하기 위한 경우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임신증명서류 (임신진단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출산증명서 또는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 제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부동산 소유현황 입증서류	청약자 및 세대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가구원수에 포함하기 위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청약자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대리인 접수 시	그 외 필요 소명서류	해당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복무확인서,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당첨자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본인 발급분)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모바일 신분증 불가)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건보주택 방문 청약신청자(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는 청약 신청 시에 상기 서류 및 청약통장 가입확인서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정부24 온라인인감증명서 제출 시 발급용도 및 제출처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발급용도 : 당첨자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 제출처 : 화성 향남 롯데캐슬 시그니처)

※ 부동산 소유현황 발급처 : 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주민등록번호 공개체크)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의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로 제출 불가합니다.

※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 상(단신부임) 해외체류(계속하여 90일 초과) 중일 경우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유학, 연수(근로 및 파견 목적 제외),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시 생업사정 불인정 됩니다. (해외에서 발급 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통/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청약자격과 입주자지속 요건을 충족한 장기복무 군인(10년 이상)은 계약체결 전 군복무기간이 명시된 복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적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는 기본 자격확인서류 외 추가의 별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6

신생아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32 세대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

-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②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 경과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 ⑤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기준 : [① 소득구분 ▶ ② 지역 ▶ ③ 추첨]

① 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우선공급 (5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일반공급 (20%)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②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화성시) ▶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③ 추첨

신생아 특별공급 자녀기준

- 임신·입양 :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합니다.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확인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0.21.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구분	소득금액 (단위 : 원)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 9,793,892	~ 11,442,863	~ 12,125,081	~ 12,878,142	~ 13,631,203	~ 14,384,265
일반공급	130% 초과 ~ 160% 이하	9,793,893 ~ 12,054,021	11,442,864 ~ 14,083,523	12,125,082 ~ 14,923,176	12,878,143 ~ 15,850,021	13,631,204 ~ 16,776,866	14,384,266 ~ 17,703,710
추첨공급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 ~	14,083,524 ~	14,923,177 ~	15,850,022 ~	16,776,867 ~	17,703,711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가구원수 산정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 단, 세대의원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근로자 월평균소득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 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
사업자 월평균소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구분	금액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 3,100만원 이하	건 축 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 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전체 세대원 제출)

해당 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전체 세대원 (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 포함)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산정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전체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정부24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 세무서(홈택스)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연봉계약서의 총급여를 월할계산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① 해당 직장 ② 세무서(홈택스)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명	① 세무서(홈택스) ② 세무서(홈택스)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명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①/② 세무서(홈택스)
	법인대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재무제표 ③ 재직증명서 ④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⑤ 사업자등록증명 ⑥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① ~ ④ 해당 직장 ⑤ 세무서 ⑥ 등기소
프리랜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행정복지센터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① 세무서 / 해당 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② 사실증명 (신고사실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하고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① 견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홈택스) * 상기 내용 참조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부동산 소유현황 입증서류 (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청약자 및 전체 세대원 제출)

해당 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및 발급처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 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해당자	① 아래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 ☎ 행정복지센터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 ☎ 행정복지센터 -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 서울시 : 'ETAX(etax.seoul.go.kr)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 외 건물 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서울시 외 : '위택스(www.wetax.co.kr)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 농지대장 / ☎ 행정복지센터 - 축산업 허가증 / ☎ 지자체 축산과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토지이음 (www.eum.go.kr)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 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전국단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 행정복지센터

- ※ 부동산 소유현황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를 하여 전체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상기 부동산 소유현황 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 만 가능합니다.)

구분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유의사항
공통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청약자	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청약자의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청약자의 혼인·이혼 이력과 모든 가족관계 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생년월일부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고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접수 불가) / 용도 : 당첨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본인 발급분)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모바일 신분증 불가)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소득증빙서류	청약자 및 세대원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소득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추가서류 (해당자)	기존주택처분 관련 서약서	청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서약서 (별지 제6호 서식, 출산특례 해당자)
	임신증명서류 (임신진단서)	청약자	출산증명서 또는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 제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배우자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부동산 소유현황 입증서류	청약자 및 세대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가구원수에 포함하기 위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청약한 경우
	그 외 필요 소명서류	해당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복무확인서,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접수 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당첨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본인 발급분)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모바일 신분증 불가)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 견본주택 방문 청약신청자(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는 청약 신청 시에 상기 서류 및 청약통장 가입확인서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정부24 온라인인감증명서 제출 시 발급용도 및 제출처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발급용도 : 당첨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 제출처 : 화성 향남 롯데캐슬 시그니처)**
- ※ 부동산 소유현황 발급처 : 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주민등록번호 공개체크)
-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의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로 제출 불가합니다.
- ※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 상(단신부임) 해외체류(계속하여 90일 초과) 중일 경우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 유학, 연수(근로 및 파견 목적 제외),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시 생업사정 불인정 됩니다. (해외에서 발급 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통/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한 장기복무 군인(10년 이상)은 계약체결 전 군복무기간이 명시된 복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적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는 기본 자격확인서류 외 추가의 별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일반공급 신청자격

-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②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합니다.)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 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기준

- 1순위 가점제 : [① 지역 ▶ ② 가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 추첨]
- 2순위 : [① 지역 ▶ ② 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 지역 ▶ ② 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 추첨]

일반공급 1순위 가점제 당첨자 선정방법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화성시) ▶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② 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화성 향남 롯데캐슬 시그니처 약식표기 (타입)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84A	84B	84C	84D	84E	84F	84G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102		112		120			-	100%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순위가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단, 청약저축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추첨

일반공급 1순위 추첨제 당첨자 선정방법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화성시) ▶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② 무주택자 우선공급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③ 추첨

가점 산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총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합니다.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합니다.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합니다.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가 필요합니다.

가점제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분	내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 (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합니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판단합니다.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판단합니다.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만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 단, 청약저축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일반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 만 가능합니다.)

구분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유의사항
공통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청약자	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청약자의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자 및 세대구성원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청약자의 혼인·이혼 이력과 모든 가족관계 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생년월일부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고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접수 불가) / 용도 : 당첨자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본인 발급분)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가서류 (해당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직계존속이 존재하거나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당첨사실 확인서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3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과거 3년간의 내역
	주민등록표초본	직계비속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과거 1년간의 내역
	그 외 필요 소명서류	해당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복무확인서,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접수 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당첨자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본인 발급분)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정부24 온라인인감증명서 제출 시 발급용도 및 제출처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발급용도 : 당첨자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 제출처 : 화성 향남 롯데캐슬 시그니처)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안내

- 청약홈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청약통장 가입은행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는 [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가 가입되어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지능력 상실 등의 사유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발급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공적 서류(ex. 장기요양인정서 등) 및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급하는 “병·의원&약국별 기본진료내역”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 상(단신부임) 해외체류(계속하여 90일 초과) 중일 경우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유학, 연수(근로 및 파견 목적 제외),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거시 생업사정 불인정 됩니다. (해외에서 발급 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통/추가서류 외에 대리인 접수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한 장기복무 군인(10년 이상)은 계약체결 전 군복무기간이 명시된 복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적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는 기본 자격확인서류 외 추가의 별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청약신청 일정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 발표
일정	2026.11.02.(월)	2026.11.03.(화)	2026.11.04.(수)	2026.11.10.(화)
방법	- PC·모바일 :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 화성 향남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	- PC·모바일 :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 청약홈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화성 향남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 현장접수 (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합니다. (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합니다.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 (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합니다.)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인감증명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분) ※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합니다.)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본인서명 확인방식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합니다.)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 및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11.10.(화) ~ 2026.11.19.(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11.10.(화) 08:00(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계약 체결 일정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구분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제출장소
기간/장소	2026.11.14.(토) ~ 2026.11.17.(화) [4일간], 10:00 ~17:00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하길리 374 (화성 향남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
대상	특별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 예비입주자 (별도 안내)	
유의사항	•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의 일정 또는 장소 변경 시에는 SMS, 홈페이지를 통하여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이내 서류제출 불가 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불가한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반드시 연락 바랍니다. •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소명기간 내(계약체결일 이전)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 및 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10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청약신청자가 청약 신청 시 잘못된 정보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 및 사업관계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적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는 기본 자격확인서류 외 추가의 별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적격 통보를 받은 세대의 해당서류	대상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해당 주택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청약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해당자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해당자

계약체결 기간 및 구비서류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기간/장소	2026.11.23.(월) ~ 2026.11.25.(수) [3일간], 10:00 ~17:00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하길리 374 (화성 향남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	
대상	특별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 (※ 예비입주자 추첨 및 계약기간은 추후 별도 통보)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유의사항
	본인 계약 시	계약금 입금 증빙내역	청약자	무통장 입금증 또는 모바일 / 인터넷뱅킹 이체내역 등 (* 현금수납 불가)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작성 서류 (거래가격 6억원 이상 계약 시 신고 의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접수 불가) / 용도 : 당첨자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본인 발급분) ※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기제출한 경우 제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모바일 신분증 불가)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자격검증서류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간 내 기제출한 경우 제외)
		추가 개별통지서류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개별통지)
	전자수입인지 (종이문서용)		APT 공급계약 등 계약자 부담부분 (개별통지)	
	대리인 계약 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당첨자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본인 발급분)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모바일 신분증 불가)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본인계약 시 서류 외에 대리인 계약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5항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및 시간(10:00 ~17:00) 내 방문하지 않거나,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참고사항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계약금(분양대금의 5%) 완납 및 분양계약 체결 후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과 별도로 중도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대출 알선을 할 예정이며,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가능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지정된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책임 및 이익을 제기할 수 없으며, 대출 불가사유로 공급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출금융기관 등이 선정되지 않았으며, 계약자에 한하여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예정입니다.
- 중도금 대출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기준으로 안내하는 것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정부정책 또는 금융기관의 대출취급방식 변경으로 인하여 시행사가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지 못할 경우 분양대금을 계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조달하여 납부조건에 따라 각 납부 회차별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담당 금융기관은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예정일은 조정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며 중도금 납입일 조정에 대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사가 선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대출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무이자 기한에 한하여는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 신청 시 본인(법정 성년후견인 포함) 외에는 중도금 대출 신청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조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중도금 대출 미신청, 대출비율 축소, 대출 불가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정해진 납부 일정에 맞춰 납부하여야하며, 미납 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및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 이에 대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해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 및 대출은행의 1순위(제2금융권에서 추가대출을 받은 경우 제2금융기관의 2순위 포함) 근저당 설정 시까지 해당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건본주택은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은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하며,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한 중도금 대출 이자 금액은 수분양자가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주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의거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주택소유현황, 청약제한 사항 등을 전산검색하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등으로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를 미제출 또는 제출하였으나 확인 필요사항 누락, 생략 등 자격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부적격 통보 및 소명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의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또는 청약제한사항 등이 있는 경우(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및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확인결과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는 유선 또는 대면, 서면의 방법으로 입주대상자에게 부적격 통보하며, 그 통보일로부터 7일의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계약체결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거 부적격당첨자의 청약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건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사전당첨자를 포함)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 의거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예비입주자의 신청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합니다.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따른 입주자 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제1순위로 공급신청할 수 없는 자가 제1순위로 공급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 제28조 제6항에 따라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 받아 당첨된 경우 -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한 번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특례 제외) - 제54조 제1항 각 호의 주택에 당첨된 자가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 제58조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가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이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사전당첨자 또는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경우 - 입주예약자가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 또는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경우 - 사전청약으로 모집된 사전당첨자가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 제55조의3 제2항에 따라 당첨된 사람이 제41조에 따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 제55조의3 제3항에 따라 당첨된 사람이 제35조의3, 제40조, 제41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이중당첨자, 본인 중복신청/당첨자, 부적격 재당첨자 처리 기준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간 특별공급 및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대한 중복청약이 가능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청약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등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또는 분양일정상 계약한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당첨유형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관계기관의 전산검색결과 수신현황 및 입주대상자의 자격확인절차 등 분양일정 상 계약완료 이후 일정시점(중도금 1회차 납부 전)까지는 사업주체의 입주 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자체점검, 재검수 등으로 인하여 부적격사항 확인 시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현장점검으로 불법전매, 부정청약,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적발시 계약완료 상당시간 이후(입주 전까지)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장소에 방문하여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주체에 제출하고 '당첨사실 삭제 및 계좌부활요청서'(건본주택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부적격 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수도권 : 1년 -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촉지역 : 3개월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반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 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본 표시 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색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 청약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외)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합니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절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9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 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1 제1호 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 :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 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제53조 제9호 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제53조 제9호 나목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85㎡ 이하	5억원
					비수도권
					1억원
					3억원
10	-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주택가격이 1억 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2)를 준용]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9

기타 계약자 안내

■ 입주예정일 : 2029년 12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

-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하고,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500세대 이상 단지는 60일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향후 일정에 따라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 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 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 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 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37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주택법」 제48조의2 제1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 및 「주택법」 제48조의2,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의거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입주자 사전방문 일정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전점검 진행절차 : ① 사전점검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현장 도착 ⇒ ③ 접수, 교육 안내 ⇒ ④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표 제출
⇒ ⑥ 입주 전 보수완료 ⇒ ⑦ 보수완료 여부 확인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된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하자판정 기준도면은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법」 제48조의2의 제1항에 의거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데 따라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가 아닌 제3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그 사실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자 등에게 통지할 예정으로, 입주자 등은 해당 법령에 따라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 아파트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 정식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성(「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의거) 이전에 형성된 입주자 모임(카페 등)에 대하여는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추가 요청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과지역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은 6개월입니다. (단,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전매금지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을 저야 합니다.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시행자가 앞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 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매자 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자격을 제한합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학교관련 유의사항

- 초등학교는 「가칭」상신1초 학교시설 신설 기부채납 협약」에 따라 가칭)상신1초를 설립하고 통학로를 조성하여 배치예정입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등 학교 설립 지연 사유 발생 시 상신3지구 사업시행자의 통학버스 운영을 전제로 서봉초에 임시배치할 예정입니다.
- 중학생은 향남중학교(하길중, 향남중, 화성상신중)에 배치 예정입니다.
- 고등학교는 화성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으로 고등학교 입학은 주소지 기준 배정이 아닌 학교별 입학전형률 통해 중학교 내신성적 등을 반영하여 선발됩니다. 이에 따라 근거리 학교를 희망하더라도 모집정원, 지원 현황 및 지원자의 성적 등에 따라 입학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경기도 내 정원 미달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학생배치계획은 향후 사업계획의 변경, 교육정책 및 주변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입주인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실입주 후 단지의 '입주자대표 위원회(가칭)'에서 결정됩니다.
- 향후 입주 후에도 주변 건축물 및 도로공사가 진행될 수 있어 먼지, 소음 발생 및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의 VR동영상은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사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마감자재 목록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모형도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내란, 전쟁,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면 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경비실,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작은도서관, 독서실, 스터디룸, 스튜디오, 레슨룸, 미디어룸, 피트니스클럽, 골프클럽, 사우나, 실내수영장, 카페라운지, 키즈카페, 코인세탁실, 게스트하우스,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키즈스테이션 등)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내진능력	내진 I 등급
------	---------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 (MMI등급, I~VII)으로 표기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구분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 2층	2.7m	-
지하 3층	2.7m	2.7m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계획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계획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계획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 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다목)	적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 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 적용
	실별 온도조절장치 (사목)	적용	세대 내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비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협의 내용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 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화성시 향남읍 향신3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

2. 신청 일자: 2023년 8월 29일

3. 인증 일자: 2023년 9월 13일

4. 인증 등급: 4등급

5. 인증 대상: 1. 공동주택명, 2. 신청 일자, 3. 인증 일자, 4. 인증 등급, 5. 인증 대상, 6. 인증 일자, 7. 인증 등급, 8. 인증 대상, 9. 인증 일자, 10. 인증 등급, 11. 인증 대상, 12. 인증 일자, 13. 인증 등급, 14. 인증 대상, 15. 인증 일자, 16. 인증 등급, 17. 인증 대상, 18. 인증 일자, 19. 인증 등급, 20. 인증 대상, 21. 인증 일자, 22. 인증 등급, 23. 인증 대상, 24. 인증 일자, 25. 인증 등급, 26. 인증 대상, 27. 인증 일자, 28. 인증 등급, 29. 인증 대상, 30. 인증 일자, 31. 인증 등급, 32. 인증 대상, 33. 인증 일자, 34. 인증 등급, 35. 인증 대상, 36. 인증 일자, 37. 인증 등급, 38. 인증 대상, 39. 인증 일자, 40. 인증 등급, 41. 인증 대상, 42. 인증 일자, 43. 인증 등급, 44. 인증 대상, 45. 인증 일자, 46. 인증 등급, 47. 인증 대상, 48. 인증 일자, 49. 인증 등급, 50. 인증 대상, 51. 인증 일자, 52. 인증 등급, 53. 인증 대상, 54. 인증 일자, 55. 인증 등급, 56. 인증 대상, 57. 인증 일자, 58. 인증 등급, 59. 인증 대상, 60. 인증 일자, 61. 인증 등급, 62. 인증 대상, 63. 인증 일자, 64. 인증 등급, 65. 인증 대상, 66. 인증 일자, 67. 인증 등급, 68. 인증 대상, 69. 인증 일자, 70. 인증 등급, 71. 인증 대상, 72. 인증 일자, 73. 인증 등급, 74. 인증 대상, 75. 인증 일자, 76. 인증 등급, 77. 인증 대상, 78. 인증 일자, 79. 인증 등급, 80. 인증 대상, 81. 인증 일자, 82. 인증 등급, 83. 인증 대상, 84. 인증 일자, 85. 인증 등급, 86. 인증 대상, 87. 인증 일자, 88. 인증 등급, 89. 인증 대상, 90. 인증 일자, 91. 인증 등급, 92. 인증 대상, 93. 인증 일자, 94. 인증 등급, 95. 인증 대상, 96. 인증 일자, 97. 인증 등급, 98. 인증 대상, 99. 인증 일자, 100. 인증 등급

2023년 8월 29일

한국생산성본부 인증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1. 건축물명: 화성시 향남읍 향신3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

2. 신청 일자: 2023년 8월 29일

3. 인증 일자: 2023년 9월 13일

4. 인증 등급: 4등급

5. 인증 대상: 1. 건축물명, 2. 신청 일자, 3. 인증 일자, 4. 인증 등급, 5. 인증 대상, 6. 인증 일자, 7. 인증 등급, 8. 인증 대상, 9. 인증 일자, 10. 인증 등급, 11. 인증 대상, 12. 인증 일자, 13. 인증 등급, 14. 인증 대상, 15. 인증 일자, 16. 인증 등급, 17. 인증 대상, 18. 인증 일자, 19. 인증 등급, 20. 인증 대상, 21. 인증 일자, 22. 인증 등급, 23. 인증 대상, 24. 인증 일자, 25. 인증 등급, 26. 인증 대상, 27. 인증 일자, 28. 인증 등급, 29. 인증 대상, 30. 인증 일자, 31. 인증 등급, 32. 인증 대상, 33. 인증 일자, 34. 인증 등급, 35. 인증 대상, 36. 인증 일자, 37. 인증 등급, 38. 인증 대상, 39. 인증 일자, 40. 인증 등급, 41. 인증 대상, 42. 인증 일자, 43. 인증 등급, 44. 인증 대상, 45. 인증 일자, 46. 인증 등급, 47. 인증 대상, 48. 인증 일자, 49. 인증 등급, 50. 인증 대상, 51. 인증 일자, 52. 인증 등급, 53. 인증 대상, 54. 인증 일자, 55. 인증 등급, 56. 인증 대상, 57. 인증 일자, 58. 인증 등급, 59. 인증 대상, 60. 인증 일자, 61. 인증 등급, 62. 인증 대상, 63. 인증 일자, 64. 인증 등급, 65. 인증 대상, 66. 인증 일자, 67. 인증 등급, 68. 인증 대상, 69. 인증 일자, 70. 인증 등급, 71. 인증 대상, 72. 인증 일자, 73. 인증 등급, 74. 인증 대상, 75. 인증 일자, 76. 인증 등급, 77. 인증 대상, 78. 인증 일자, 79. 인증 등급, 80. 인증 대상, 81. 인증 일자, 82. 인증 등급, 83. 인증 대상, 84. 인증 일자, 85. 인증 등급, 86. 인증 대상, 87. 인증 일자, 88. 인증 등급, 89. 인증 대상, 90. 인증 일자, 91. 인증 등급, 92. 인증 대상, 93. 인증 일자, 94. 인증 등급, 95. 인증 대상, 96. 인증 일자, 97. 인증 등급, 98. 인증 대상, 99. 인증 일자, 100. 인증 등급

2023년 8월 29일

한국생산성본부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1. 건축물명: 화성시 향남읍 향신3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

2. 신청 일자: 2023년 8월 29일

3. 인증 일자: 2023년 9월 13일

4. 인증 등급: 4등급

5. 인증 대상: 1. 건축물명, 2. 신청 일자, 3. 인증 일자, 4. 인증 등급, 5. 인증 대상, 6. 인증 일자, 7. 인증 등급, 8. 인증 대상, 9. 인증 일자, 10. 인증 등급, 11. 인증 대상, 12. 인증 일자, 13. 인증 등급, 14. 인증 대상, 15. 인증 일자, 16. 인증 등급, 17. 인증 대상, 18. 인증 일자, 19. 인증 등급, 20. 인증 대상, 21. 인증 일자, 22. 인증 등급, 23. 인증 대상, 24. 인증 일자, 25. 인증 등급, 26. 인증 대상, 27. 인증 일자, 28. 인증 등급, 29. 인증 대상, 30. 인증 일자, 31. 인증 등급, 32. 인증 대상, 33. 인증 일자, 34. 인증 등급, 35. 인증 대상, 36. 인증 일자, 37. 인증 등급, 38. 인증 대상, 39. 인증 일자, 40. 인증 등급, 41. 인증 대상, 42. 인증 일자, 43. 인증 등급, 44. 인증 대상, 45. 인증 일자, 46. 인증 등급, 47. 인증 대상, 48. 인증 일자, 49. 인증 등급, 50. 인증 대상, 51. 인증 일자, 52. 인증 등급, 53. 인증 대상, 54. 인증 일자, 55. 인증 등급, 56. 인증 대상, 57. 인증 일자, 58. 인증 등급, 59. 인증 대상, 60. 인증 일자, 61. 인증 등급, 62. 인증 대상, 63. 인증 일자, 64. 인증 등급, 65. 인증 대상, 66. 인증 일자, 67. 인증 등급, 68. 인증 대상, 69. 인증 일자, 70. 인증 등급, 71. 인증 대상, 72. 인증 일자, 73. 인증 등급, 74. 인증 대상, 75. 인증 일자, 76. 인증 등급, 77. 인증 대상, 78. 인증 일자, 79. 인증 등급, 80. 인증 대상, 81. 인증 일자, 82. 인증 등급, 83. 인증 대상, 84. 인증 일자, 85. 인증 등급, 86. 인증 대상, 87. 인증 일자, 88. 인증 등급, 89. 인증 대상, 90. 인증 일자, 91. 인증 등급, 92. 인증 대상, 93. 인증 일자, 94. 인증 등급, 95. 인증 대상, 96. 인증 일자, 97. 인증 등급, 98. 인증 대상, 99. 인증 일자, 100. 인증 등급

2023년 8월 29일

한국생산성본부 인증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서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서

1. 건축물명: 화성시 향남읍 향신3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

2. 신청 일자: 2023년 8월 29일

3. 인증 일자: 2023년 9월 13일

4. 인증 등급: 4등급

5. 인증 대상: 1. 건축물명, 2. 신청 일자, 3. 인증 일자, 4. 인증 등급, 5. 인증 대상, 6. 인증 일자, 7. 인증 등급, 8. 인증 대상, 9. 인증 일자, 10. 인증 등급, 11. 인증 대상, 12. 인증 일자, 13. 인증 등급, 14. 인증 대상, 15. 인증 일자, 16. 인증 등급, 17. 인증 대상, 18. 인증 일자, 19. 인증 등급, 20. 인증 대상, 21. 인증 일자, 22. 인증 등급, 23. 인증 대상, 24. 인증 일자, 25. 인증 등급, 26. 인증 대상, 27. 인증 일자, 28. 인증 등급, 29. 인증 대상, 30. 인증 일자, 31. 인증 등급, 32. 인증 대상, 33. 인증 일자, 34. 인증 등급, 35. 인증 대상, 36. 인증 일자, 37. 인증 등급, 38. 인증 대상, 39. 인증 일자, 40. 인증 등급, 41. 인증 대상, 42. 인증 일자, 43. 인증 등급, 44. 인증 대상, 45. 인증 일자, 46. 인증 등급, 47. 인증 대상, 48. 인증 일자, 49. 인증 등급, 50. 인증 대상, 51. 인증 일자, 52. 인증 등급, 53. 인증 대상, 54. 인증 일자, 55. 인증 등급, 56. 인증 대상, 57. 인증 일자, 58. 인증 등급, 59. 인증 대상, 60. 인증 일자, 61. 인증 등급, 62. 인증 대상, 63. 인증 일자, 64. 인증 등급, 65. 인증 대상, 66. 인증 일자, 67. 인증 등급, 68. 인증 대상, 69. 인증 일자, 70. 인증 등급, 71. 인증 대상, 72. 인증 일자, 73. 인증 등급, 74. 인증 대상, 75. 인증 일자, 76. 인증 등급, 77. 인증 대상, 78. 인증 일자, 79. 인증 등급, 80. 인증 대상, 81. 인증 일자, 82. 인증 등급, 83. 인증 대상, 84. 인증 일자, 85. 인증 등급, 86. 인증 대상, 87. 인증 일자, 88. 인증 등급, 89. 인증 대상, 90. 인증 일자, 91. 인증 등급, 92. 인증 대상, 93. 인증 일자, 94. 인증 등급, 95. 인증 대상, 96. 인증 일자, 97. 인증 등급, 98. 인증 대상, 99. 인증 일자, 100. 인증 등급

2023년 8월 29일

한국생산성본부 인증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요 보증내용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22026-101-0002100 호	₩550,017,65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
- ※ 사업시행권 양도에 관한 사항 : 당사가 본 아파트 사업장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 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 분양수입금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된 결제관리 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 ※ 사업주체가 정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물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목 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대상이 아닙니다.
- ※ 기타문의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566-9009)

■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분양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공급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을 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획(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획을, 공사가 입주금납부계획을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획을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종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종지통보계획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약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자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
 (예시 : 홀오토, 발코니새시, 마이너스 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감리금액은 인허가 및 실제공사 진행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	전기	소방	통신
상 호	(주)무영씨엠엔건축사사무소	(주)대림엠이씨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	(주)하나종합건축사사무소
금 액	₩5,774,819,600	₩782,936,231	₩1,172,345,000	₩385,000,000

사업주체 현황

구 분	사업주체(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사
상 호	신영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주식회사 젤존	롯데건설(주)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 (여의도동)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7, 1624호 (영통동, 웨미리타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4길 29 (잠원동)
법인등록번호	110111-7126835	110111-3555666	110111-0014764

관리형태지신탁

- 본 분양목적물은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자” (주)젤존과 토지를 수탁받은 “수탁자” 신영부동산신탁(주) 및 시공사 롯데건설(주) 간에 체결한 관리형태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며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1. 관리형태지신탁계약에 근거하여 시행수탁자인 신영부동산신탁(주)는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는 자로서 신탁재산 및 관리형태지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본 사업관련 실질적 사업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습니다.
 2. 본 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본 공고에 규정된 수탁자(사업주체) 명의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분양계약자에게 본 계약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과 위탁자와 수탁자인 신탁계약 해지 또는 종료되는 시점 중 빠른 시점에, 분양계약상 매도인의 지위 및 제반 권리의무(하자보수 및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와 관련하여 분양계약자는 수탁자에게 일체의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수탁자는 분양계약과 관련한 매도인(공급자)으로서의 제반 의무(공급금액 반환, 지체상금 배상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음)를 현존하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담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책임범위에 따라 위탁자 또는 시공사에게 있습니다.
 5. 신탁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전과 후를 불문하고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보수책임(사용감사전 발생하자 포함)은 시공자인 롯데건설(주)가 부담합니다.
 6. 분양대금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정한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설계비, 감리비 및 그 밖의 부대사업비 등 해당 분양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7. 수탁자와 무관한 분양계약자의 대출결격사유(신용불량, 한도초과 등) 또는 대출공용기관의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분양계약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 수탁자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아니하며 분양계약자의 책임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 사업시행과 관련한 필수적인 계약에 관한 승계계약체결, 자금관리 등 법률상 사업시행자로서 해야하는 형식적인 업무만을 수행하고 분양계약자들과의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서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탁자가 임의로 분양계약자와 체결한 각종 합의서, 약정서 등은 수탁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9.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10

유의사항

단지 여건 및 유의사항 (※ 아래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길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내용
도로 및 기반시설	단지 서측에는 폭 26M 도로가, 남서측에는 완충녹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지경계선 밖 계획은 단지 내 소유가 아니며 인허가청과의 심의, 협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고, 실시공 시 형태, 높이,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해당시설로 인한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 단지의 외부에 있는 완충녹지는 계획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면적상의 대지지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인해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북측에는 폭 22.5M도로 및 하길천을 포함한 수변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길천 및 도시계획공원인 수변공원은 인허가청과의 심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고, 해당 시설로 인한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공 시 경계(분할)측량 후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면적상의 대지지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인해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세대당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확정측량 등으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고,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단지 주위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으며, 카탈로그 및 모형, CG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시공과 동선, 식재, 레벨계획, 옹벽디자인, 마감재 및 경사도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공사 시 사업주체 및 인허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웬스설치	본 사업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조경, 도목, 옹벽,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 일체)과 경사도 및 레벨 계획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사업계획 변경이 수반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경기도 주택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본 주택단지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하거나 설치가 계획된 주요 기반시설은 4차로 이상 도로[서해로, 향남로, 중로 1-10호선 및 중로 1-11호선(사업시행자 조성 예정)], 공원(금곡문화공원 1개소, 수변공원 2개소(사업시행자 조성 예정)], 유수지 2개소(수변공원 하부 1개소는 사업시행자 조성 예정), 지방하천(하길천 1개소(하길천))이 있으며, 상기 기반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조성 일정 등은 관계기관의 인허가 및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역경계	본 단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동주택용지로서 당 구역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도로, 하천, 공원, 녹지, 유수지 등은 본 단지 준공시 조성 완료될 예정입니다.
	단지외곽 경계에 웬스 또는 생활타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계획은 인허가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전편, 보행자 출입구간에는 별도의 외부인 차단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단지 주변 수변공원, 완충녹지 및 당 단지 내 레벨이 상이하여 단차가 생기는 구간에 대해서는 조경석, 옹벽, 사면처리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카탈로그 및 모형, CG등 분양 홍보물에 표현된 조경석, 옹벽, 사면처리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시공시 아파트의 현장여건 등에 따라 구간, 높이, 옹벽디자인 등의 계획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분양 시 계획된 경관조명 계획은 아관경관심의 의견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외관,아간 경관조명, 조경, 식재디테일은 인허가 및 실제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본공사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 현장은 2026년 5월 최초 사업승인완료(2025년 11월 접수)를 한 사업장으로, 경과규정의 적용 가능한 법적기준(친환경인증 포함)에 대해서는 최초 인허가 접수일 혹은 완료일

구분	내용
	당시의 기준을 준수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위한 BIPV(일부동), 태양광시스템(전체동)이 반영되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일조 등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그 위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공사 시,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등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경미한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 하지 않습니다.
	인허가 절차상의 각종 인준 및 심사를 통해 일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 않습니다.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정 및 식재계획, 포장재,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은 위치, 디자인, 구조, 높이,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 소음, 도로로 인한 시야 간섭 등의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준공 시 소방관련부서 또는 기관 등의 협의에 따라 외부 조정 라인, 동선 및 단위세대 내 소방시설 설치 관련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분양홍보물 및 건본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 제작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의 내용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건본주택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각종 광고, 홈페이지 및 홍보물의 내용은 인허가 과정, 관계기관의 사정 및 관련 정책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건본주택을 확인하시어 청약 및 계약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분양 홍보에 사용된 모형 및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선, 기능, 성능 및 식재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등은 인허가 협의, 측량 및 각종 평가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본주택 및 분양홍보물 등에 제시된 마감재 수준 이상의 변경 요구는 불가하오니, 마감재의 품질 및 사양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건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 기간 공개 되며,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건본주택은 84B, 84C, 120타입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동일 타입 및 미건립 타입이라도 동,호수 및 단지 배치에 따라 건본주택과 좌우 대칭 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본주택 및 홈페이지의 주택형 표기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표기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본주택 및 홈페이지에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사정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구 등을 임의로 배치한 것으로, 실제 제공 품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건립 타입은 홍보물을 참고하시어 평면 형태, 가구 배치, 실면적, 마감재 등 건본주택 건립타입과 차이점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세대 마감재는 타입별 디자인 컨셉에 따라 구분 적용되며, 별도의 선택 및 변경은 불가합니다.
	건본주택 단위세대에는 기본품목, 옵션품목 및 전시품목이 혼합 시공되어 있으며, 본공사는 사업승인도서 및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되므로 청약 및 계약 전 적용 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확장 선택 시 확장형에 비해 공간이 협소하고 제품 품목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계약조건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사항 (단지계획)	단위세대의 내부 치수는 시공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며, POP에 표기된 실 치수는 확장형 안목치수 기준으로 가구 및 마감재 두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본주택 세대 현관의 금속 프레임 및 공용부 마감은 연출용으로 본공사와 무관하며, 본공사 시 방화문틀 및 방화문이 설치됩니다. 단위세대 마감재 적용 범위는 세대 현관 문틀을 경계로 내부에 한합니다.
	단위세대에 설치된 조명 중 직부등 및 매립등을 제외한 전사용 조명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단위세대 내부의 CCTV, 소화기 등은 건본주택 운영을 위한 시설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112동, 113동 남측변으로 주동과 약 17.9~21.9m 이격하여 옹벽이 계획되어 있으며, 저층세대는 조망, 일조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형주차는 총 134대이며 아파트 131대, 근생 3대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 복도, 계단, 필로티, 옥상, 조정,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 및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 공간은 입주자 공동의 사용을 위한 공간으로, 개별 입주자가 이를 임의로 전용하거나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습니다.
	각 동별 주동 출입구는 동별 특성에 따라 디자인 및 높이, 폭, 동선 등이 상이하며 주동 출입구 및 외벽면에서 돌출된 구조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본공사 시, 시공여건 및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상장식물, 창틀모양, 동출입구 등), 지하출입구, 선관, 외부시설물 (난간디테일, DA(드라이 에어리어), 쓰레기보관소 등), 조정디자인(식재, 시설물, 구조물, 조정바닥패턴 등), 주차장 구조체 공법은 경미한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통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 및 의견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주동의 동출입구 및 외부 저층부 3개층 높이(PI+층 및 필로티 포함)는 지정석재 마감이며, 재료의 색상 및 디자인은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저층부 세대는 단지 주변도로, 단지 내 비상차로, 부대복리시설, 가로등, 차량출입구 및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에 의해 소음, 조망 등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1, 102, 107, 108, 112, 116, 117동 옥상구조물에는 조명형 B.I, 101, 105, 106, 107동 측벽에는 특화측벽, 115, 116, 117동 측벽에는 경관조명, 108, 111, 112, 113, 114, 115, 116, 117동에는 BIPV가 설치 됩니다. 이로 인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수 있습니다.
	101동, 104동, 107동, 110동 저층세대는 조망, 일조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측 국도39호선과 인접한 108동, 115동, 116동, 117동에서는 교통소음으로 인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정, 창호형태, 입면 장식물등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1층에서 E/V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습니다. 당 단지는 확장 시 거실, 주방 및 안방에 조망형 이중창 적용으로 유리난간이 설치되어 사다리차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량 출입구를 제외한 단지 내 도로는 비상차로로 입주 후 단지운영에 따라 우편물, 택배, 이삿짐, 구급 차량 등이 단지에 비상차량 동선을 통해 진입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지하3층에 택배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천정고를 적용합니다.
	우편물보관함은 지상1층 각 동 출입구 내부 공용홀에 설치되며, 각 동별로 위치 및 규모는 상이할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북측 차량 주출입구, 부출입구 인근에 어린이 버스 승하차 대기용 공간인 키즈스테이션(2개소)이 조성되며, 어린이 버스 승하차 대기용 공간은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 및 차량동선, 차량대기 공간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 시와 다르게 위치 및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 상부 조정토심의 일부 변경될수 있습니다.
	주동 필로티 진출입구간에 낙하물 방지 시설물이 추가 될수 있습니다.
	주동 옥상의 철제난간 설치영역은 변경 될수 있습니다.
	단지 내 조정식재, 물놀이시설, 수경시설, 야간조명 및 홈네트워킹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후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수경시설은 수질정화를 위한 장치가 설치되나 음용할 수 없으며, 수경시설 가동에 따른 관리비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관련한 내용은 입주 후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구분	내용
	단지 내 옹벽, 조경식재, 마운딩, 플랜터 등 구조물 및 시설물 설치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조망, 일조에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식재기반조성 및 미관개선을 위해 분양홍보물과 상이한 구조물(플랜터, 마운딩 등)이 계획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일부 저층세대에 일조, 조망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획선과 구조물/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본공사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 소음, 도로로 인한 시간간섭 등의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소방안전매트 설치가 권장될 경우 해당 구간에 식재가 제한되어(교목 및 관목 식재 불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가로경관에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동 필로티 내부 및 주출입구 인근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고 자전거보관함 설치 대수 충족 및 공간 활용성을 고려하여 일부 구간은 2개층형의 자전거보관함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경우 일부 노약자 사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로티 인근에 휴게시설, 포켓정원 등 조경시설이 인접하게 설치되어 일부 통행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인해 일부 저층세대 조망권 및 소음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현장여건 및 미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설치되는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공간(포켓정원), 휴게소, 수경시설, 광장, 주민공동시설 및 단지 내 공지, 소방도로, 산책로, 보행가로변에 인접한 세대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수경시설의 개수, 위치, 형태 및 규모는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수경시설과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소음과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단지내 수경시설에는 수질정화를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있으나 음용할 수 없으며, 관상용시설의 경우 별도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고, 물놀이 시설의 경우 별도 안전요원이 배치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텃밭(팜가든) 설치가 될 경우, 농기구 및 보관함은 별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단지 외부 및 기반시설의 레벨차가 발생하는 구간에 대하여 조경석쌓기, 화계, 옹벽, 사면처리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모형, CG 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조경석쌓기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시공시 아파트의 현장여건, 미관 개선 등에 따라 구간, 높이, 디자인, 재질 등의 계획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공동주택용 쓰레기분리수거장이 13개소로 설치될 예정이며(근린생활시설용 2개소 별도이며 이 중 1개소 필로티 내 설치)로 설치될 예정이며, 각 동 인근 지상층에 계획되어 있고 동 별 쓰레기분리수거장의 사이즈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공사 시 현장여건 및 미관, 사용성 개선, 외부조경 공간의 배치 개선시 쓰레기분리수거장의 위치, 크기 및 디자인은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쓰레기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용 쓰레기분리수거함은 각 동별로 설치되나 동별 쓰레기분리수거함이 인접할 경우 통합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각 쓰레기분리수거함의 위치와 크기, 세대와의 거리는 시공 여건에 따라 분양 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각 동출입구와 쓰레기분리수거장의 거리는 각각 상이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근린생활시설 주차면 또는 인근 건축데크 하부 등 실내에 설치되어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각 쓰레기분리수거함의 위치 및 규모는 시공 여건에 따라 분양 시와 다소 상이해 질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상부에는 세대 미관 개선을 위한 인조잔디나 옥상녹화가 설치될 수 있으며, 거주자 이용 불가한 공간이며, 출입을 위한 유지관리용 출입문 또는 옥외사다리 설치 등 현장 여건에 따라서 디자인 및 범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 소음, 도로로 인한 시간간섭등의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장 여건 등 단지 외부 및 기반시설의 레벨차가 발생하는 경우, 근린생활시설 전후면에 근린생활시설 출입을 위한 계단 및 경사로가 추가 조성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행자 동선에 간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동 주변에는 소방용 연결송수구가 설치 될 예정입니다. 아파트 옥상부에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안테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설비 구축을 위해 옥탑에 설치되며 추후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옥상부 및 입면에는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에 준하여 태양광집광판 구조물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빛반사등에 의한 눈부심 및 풍음등이 일부세대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IP(전용화선)사용으로 관리 비용이 발생합니다. 원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블루투스 연동은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수신거리 및 기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 OS 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동현관 열림과 승강기 호출기능 외에 세대현관 제어 기능은 없습니다. 또한 원패스 시스템 업체로부터 제공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는 3년간 무상으로 지원되며, 이후 유상으로 변경 됩니다. 스마트홈 IoT사업자의 서비스가 적용 될 경우 입주지원기간 종료 시점으로부터 2년간 무상 지원되며, 이후에는 유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음성인식 스피커는 별도 구매 품목이며 스마트홈IoT 연동 가전제품은 서비스사업자와 제휴된 가전에 한해 가능함. 또한 스마트홈 IoT사업자의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업체의 정책에 따라 임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에 따라 "103, 105, 108, 109, 110, 112, 116, 117동" 옥상층에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103, 105, 108, 109, 110, 112, 116, 117동 옥상층, 지하2층 헬륨(8개소)"에 이동통신용 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시공중 현장 여건에 따라 중계기 및 안테나 설치 위치가 변동 될 수 있으며 , 이로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유지관리에는 3년간 무상지원되며, 이후에는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기술기준에 따른 홈네트워크망, 홈게이트웨이 등 필수 설비 유지보수는 이와 별개로 관리주체가 수행해야합니다.) 외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대제어 및 정보조화가 가능한 '롯데 스마트홈'서비스는 3년간 무상지원되며, 이후에는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합니다. 세대내 엘리베이터 호출 기능은 공용홀 동일층 승강기 호출기능과 연계되어 작동하며, 호출되는 승강기는 사용환경에 따라 호출 호기가 변경되어 표기 될 수 있습니다. 월패드, CATV 등에서 확인가능한 단지내 놀이터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모든 입주인의 동의를 득한 경우에 한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현재 본 사업장 인근 측사는 존재하지 않으나, 가측분뇨로 인한 악취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본 단지 주변에 향남제약산업단지 및 발안일반산업단지(악취관리지역)가 위치하는 바, 악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본 단지 주변에 향남제약산업단지 및 발안산업단지가 위치하는 바, 산업단지 인접에 따른 영향발생이 가능한 지역임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본 단지는 도로교통 소음 피해 영향이 발생 가능한 지역이므로 도로교통소음에 대해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본 단지는 오산군옹비하장 소음대책지역 제3종구역에서 약 3.5km 이격된 위치에 입지하고 있어 공용비행기 소음의 영향이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단지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으며, 내진 I 등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지출입구	단지 차량출입구는 북측 1개소, 북서측 1개소가 설치되며, 101, 102, 107, 108동 등의 저층세대는 진출입 차량의 운행에 의한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차공간 및 이의 연계된 키즈스테이션은 북측차량 주출입구, 부출입구에 2개소 계획되어 있으며 인접 세대는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에 의해 소음, 조망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로티	112, 113동을 제외한 주동 출입구에 필로티 계획이 되어 있으며, 필로티 일부공간에 자전거 보관소 및 DA가 설치됨에 따라 일부 통행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저층 일부세대 소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로티 내부계획 및 마감높이는 상이할 수 있고, 설비배관 시공 등으로 인하여 천정에 단차가 발생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각 동별 지하층 동출입구 인근 제연행로이 계획되어 있어 저층 일부세대에서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받을 수 있습니다.
	105, 109동은 별도의 주동출입구가 설치되며 112, 113동을 제외한 주동은 필로티 출입구가 설치됨. 주동출입구 및 필로티 내부 계획 및 높이는 코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101동 북서측 단차 하부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이 계획되어 소음, 냄새, 매연,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동 동측 단차 하부에 단지 주출입구, 지하주차장 출입구,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동 남서측에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남동측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동 서측 단차 하부에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동 남서측에 DA(2개소)가 설치되며, DA발전기 가동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매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경권 침해될 수 있습니다.
	102동 필로티 하부로 비상차량 동선이 계획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진동,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2동 북서측 단차 하부에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키즈스테이션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2동 동측 DA(1개소)가 설치되며 DA 발전기 가동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매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경권 침해될 수 있습니다.
	102동 남측에 휴게공간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2동 서측 및남서측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2동 남서측에 지상1층(LV 27.10)으로 연결되는 ELEV가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 102동 동측 단차 하부에 대지 내 조경(5M)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3동 북측에 지상1층(LV 27.10)으로 연결되는 ELEV가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3동 북측에 쓰레기분리수거장, 휴게공간 및 서측에 중앙광장 휴게공간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3동 필로티 하부로 비상차량 동선이 계획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진동,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3동 남측에 탐라이트 및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3동 남측 DA(1개소)가 설치되며 DA 발전기 가동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매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경권 침해될 수 있습니다.
	104동 북측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쓰레기보관함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간섭, 소음, 프라이버시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4동 동측 DA(1개소)가 설치되며 DA 발전기 가동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매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경권 침해될 수 있습니다.
	104동 남, 서측에는 단지 내 조경공간(휴게공간 포함 중앙광장)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간섭, 소음, 프라이버시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5동 주동 하부에 1개층으로 설치된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에 의해 저층세대의 진동, 소음 및 프라이버시,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5동 북측 단차 하부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이 계획되어 소음, 냄새, 매연,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5동 북측에 하길천을 포함한 수변공원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간섭, 소음, 프라이버시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5동 북측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5동 동측에 유아놀이터,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간섭, 소음, 프라이버시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5동 남서측에 경로당, ELEV 및 계단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간섭, 소음 및 프라이버시,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출입구	105동 남측에는 단지 내 조경공간(휴게공간 포함 중앙광장)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간섭, 소음, 프라이버시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5동 서측에 외부계단 및 단지 내 조경공간(휴게공간, 수경시설 포함 입구계단)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간섭, 소음 및 프라이버시,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6동 주동 하부에 2개층으로 설치된 관리사무소, 작은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에 의해 저층세대의 진동, 소음 및 프라이버시,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6동 북측에 하길천을 포함한 수변공원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간섭, 소음, 프라이버시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6동 북측에 수변공원으로 내려가는 ELEV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간섭, 소음, 프라이버시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6동 동측에 DA(1개소)가 설치되며 DA 발전기 가동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매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경권 침해될 수 있습니다.
	106동 동측에 외부계단 및 단지 내 조경공간(휴게공간, 수경시설 포함 입구계단)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간섭, 소음 및 프라이버시,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6동 남측에 어린이놀이터, 바닥분수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간섭, 소음, 프라이버시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6동 서측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7동 북측에 하길천을 포함한 수변공원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간섭, 소음, 프라이버시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7동 동측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7동 남서측 단차 하부에 단지부출입구, 부문주, 키즈스테이션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7동 남측에 부출입구로 내려가는 ELEV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간섭, 소음, 프라이버시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7동 남동측에 어린이놀이터, 바닥분수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간섭, 소음, 프라이버시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8동 단차 하부에 근린생활시설-2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8동 북측 단차 하부에 근린생활시설 및 단지부출입구, 부문주, 키즈스테이션, 옥외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8동 북측에 +17.25에서 +27.10로 이동하는 외부계단이 계획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간섭, 소음, 프라이버시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8동 필로티 하부로 비상차량 동선이 계획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진동,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8동 동측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8동 남측에 DA(2개소)가 설치되며 DA 발전기 가동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매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경권 침해될 수 있습니다.
	108동 남측에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간섭, 소음, 프라이버시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7, 108동 서측 단차 하부에 대지 내 조경(5M)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9동 북서측에 어린이놀이터, 바닥분수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간섭, 소음, 프라이버시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9동 북측에 DA(2개소), 남동측에 DA(1개소), 남측에 탐라이트가 설치되며 DA 발전기 가동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매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경권 침해될 수 있습니다.
	109동 동측에는 단지 내 조경공간(휴게공간 포함 중앙광장)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간섭, 소음, 프라이버시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9동 남측, 서측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9동 남서측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간섭, 소음, 프라이버시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0동 북측, 서측, 남측 주변으로 단지 내 조경공간(휴게공간, 수경시설 포함한 중앙광장)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간섭, 소음, 프라이버시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110동 북측에 탐라이트, DA(3개소)가 설치되며 DA 발전기 가동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매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경권 침해될 수 있습니다.
	110동 동측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0동 남측에 게스트하우스가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간섭, 소음, 냄새, 매연,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0동 남측에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간섭, 소음, 프라이버시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1동 북측에 탐라이트(1개소),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1동 북측에 DA(1개소)가 설치되며 DA 발전기 가동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매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경권 침해될 수 있습니다.
	111동 남측에 쓰레기분리수거장, DA(1개소)가 설치되며 DA 발전기 가동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매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경권 침해될 수 있습니다.
	111동 남측에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간섭, 소음, 프라이버시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1동 서측에는 단지 내 조경공간(휴게공간 포함 중앙광장)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간섭, 소음, 프라이버시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1동 서측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2동 북측에 탐라이트(1개소),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2동 북측에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간섭, 소음, 프라이버시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3동 북측에 휴게 및 운동공간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간섭, 소음, 프라이버시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3동 서측 단지 하부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간섭, 소음, 프라이버시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2,113동 하부세대는 남측에 위치한 옹벽에 의해 조망, 채광이 간섭될 수 있으며, 주변 레벨에 따라 옹벽높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2동 서측에 DA(2개소)가 설치되며 DA 발전기 가동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매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경권 침해될 수 있습니다.
	112동 북측에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공간, 쓰레기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간섭, 소음, 프라이버시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2동 남측에 휴게 및 운동공간이 남측에 휴게 및 운동공간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간섭, 소음, 프라이버시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3동 북측에 탐라이트(1개소),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4동 남측 클럽핑정원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간섭, 소음, 프라이버시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3동 남측에 주민운동시설 및 휴게공간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간섭, 소음, 프라이버시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3동 북측에 게스트하우스가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간섭, 소음, 냄새, 매연,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3동 서측에 DA(1개소)가 설치되며 DA 발전기 가동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매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경권 침해될 수 있습니다.
	114동 북측에는 단지 내 조경공간(휴게공간, 수경공간 포함 중앙광장)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간섭, 소음, 프라이버시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4동 남동측에는 쓰레기분리수거장, DA(1개소)가 설치되며 DA 발전기 가동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매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경권 침해될 수 있습니다.
	114동 남측 클럽핑정원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간섭, 소음, 프라이버시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4동 서측 완충녹지에 의한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간섭, 소음, 프라이버시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4동 서측 DA(1개소)가 설치되며 DA 발전기 가동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매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경권 침해될 수 있습니다.
	115동 북동측에 단지 내 조경공간(휴게공간 포함 중앙광장), 동측에 클럽핑정원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간섭, 소음, 프라이버시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5동 동측 DA(1개소)가 설치되며 DA 발전기 가동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매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경권 침해될 수 있습니다.
	115동 저층세대는 남측에 위치한 완충녹지에 의해 조망간섭, 프라이버시 및 환경권 침해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변 레벨계획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15동 서측 DA(2개소)가 설치되며 DA 발전기 가동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매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경권 침해될 수 있습니다.
	115동 서측 탐라이트(1개소), 쓰레기분리수거장,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5동 북측, 서측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6동 북측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간섭, 소음, 프라이버시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6동 동측 쓰레기분리수거장, DA(1개소)가 설치되며 DA 발전기 가동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매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경권 침해될 수 있습니다.
	116동 저층세대는남측에 위치한 완충녹지에 의해 조망간섭, 프라이버시 및 환경권 침해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변 레벨계획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16동 서측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간섭, 소음, 프라이버시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7동 북측 단지 하부에 쓰레기분리수거장, DA(2개소)가 설치되며 DA 발전기 가동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매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경권 침해될 수 있습니다.
	117동 북서측 클럽핑정원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간섭, 소음, 프라이버시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7동 저층세대는 남·남서측에 위치한 완충녹지에 의해 조망간섭, 프라이버시 및 환경권 침해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변 레벨계획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17동 서측 DA(1개소)가 설치되며 DA 발전기 가동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매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경권 침해될 수 있습니다.
	108~116동 사이, 102~103동 사이 지하층에는 오수이송장치실이 설치되며, 해당동 주변에는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엘리베이터	주동 코어별 엘리베이터 계획은 승인도서 계획에 따라 시공될 예정이며, 2호조합 코어당 1대, 3호조합 코어당 2대 설치될 예정입니다.
외부 계단 및 엘리베이터	외부코어1(ELEV)은 102동 남측에 설치되며, 데크하부(FL18.05)부터 지상 1층(FL27.10)까지 운행할 수 있습니다
	외부코어2(ELEV, 계단실)은 게스트하우스 남쪽에 설치되며, 지하3층 주차장 부터 지상1층(FL27.10)까지 운행할 수 있습니다.
	외부코어3(ELEV)은 106동 북측에 설치되며, 수변공원동선(FL15.65)부터 지상1층(FL27.10)까지 운행되므로 주민공동시설 이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부코어4(ELEV)은 105동서측에 설치되며, 지하3층부터 지상1층까지 운행되므로 주민공동시설 이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부코어5(ELEV, 계단실)은 107동 남측에 설치되며, 지하3층부터 지상1층까지 운행되므로 주민공동시설 이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인택배 우편물보관함 세대창고	외부코어6(ELEV, 계단실)은 106동 중간에 설치되며, 지하3층부터 지하2층까지 운행되므로 주민공동시설 이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인택배함은 각 동별 지하3층 주차장 주동출입구 인근에 코어별 1개소 이상 설치될 예정이며, 각 동별 개수, 위치 및 이동거리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보관함은 지상1층 각 동 출입구 내부 공용홀에 설치되며, 각 동별로 위치 및 규모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세대창고는 지하2층 주동하부PIT 및 지하3층 일부공간에 분산되어 설치될 예정입니다.
	지하주차장은 지하3층(FL18.05)~지하2층(FL21.85)까지 2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차량진입구의 주차차단기 설치로 외부차량 진입시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하3층은 택배차량의 이동을 고려하여 메인차량동선의 주행통로 높이는 2.7m로 계획됨. 지하주차장 이용시 택배차량의 정하차로 인해 일부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고, 2.7m를 초과하는 탑차(택배운송등)는 지하주차장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하3층(FL18.05)에 급속24대, 완속93대 설치되어 있으며,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주차공간의 장애인주차 폭 3.3m, 확장주차 폭2.6m, 일반주차 폭 2.5m, 경형주차 폭 2.0m로 계획되었으나 시공오차에 따라 폭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지하주차장 층별 각 주동의 접근 및 주차 진출입구, 램프의 위치, 부대시설 및 기계전기설 등 관련 공간 계획으로 인해 각 주동별로 주차장 이용에 거리와 동선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으며 계약전 필요시 인허가 도서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지하주차장의 배수 트랜치는 원활한 배수를 위한 시설로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으며 하자가 아닌 사항으로 이에 유의바랍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일부 밀폐된 공간은 환기 부족시 일부 바닥면 및 벽면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는 일부 동 지하 인근 급기, 배기용 환풍기 설치되어 있어 주변으로 소음 또는 열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공사 시 용도, 규모, 동선, 주차면위치, 디자인, 재료, 시설계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의 층별 각 주동의 접근 및 주차 진출입구, 램프의 위치, 부대시설 및 기계전기설 등 관련 공간 계획으로 인해 각 주동별로 주차장 이용에 거리와 동선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주차대수 확보를 위하여 기동간격이 일부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부 주차면에는 기동과 간섭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발전기실/전기실/저수조 등 각종 기전기설 공간이 지하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와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하주차장에는 동지하 E/V홀 냉난방용 실외기가 노출 설치되며, 실외기 주변으로 소음 또는 열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는 추후 실공사 과정에서 위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전용 쓰레기보관함은 현재 별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근생1주차장, 108동 하부)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진출입구, 부출입구 인근에 1개층 규모로 2개소 계획되어 있으며, 인접한 101, 105, 108동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매연,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부출입구 인근 근린생활시설 전면에는 대지내 조정(5M)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일체는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 의해 본공사시 내·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구조, 높이,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각 부대복리시설을 이용하는 전용 출입구,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로 인해 인접한 세대의 소음, 진동, 냄새, 조망권, 일조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및 부속실(방재실, MDF실, 숙직실 등)은 106동 하부 에듀클럽(작은도서관, 독서실 등)의 지하3층에 설치되고 작은도서관, 독서실과 동일한 출을 사용합니다. 또한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어 있고, 지상층과 연결되는 외부 엘리베이터 및 계단이 설치되어 사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 및 독서실 등에 소음,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에듀클럽(작은도서관, 독서실, 스튜디오, 레슨룸, 미디어룸 등)이 106동 하부 지하3층과 지하2층에 설치됨.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어 있고, 지상층 및 외부와 연결되는 내부 엘리베이터 및 계단이 설치됩니다.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 및 독서실 등에 소음, 진동,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본공사시 그 위치 및 용도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에듀클럽의 작은도서관은 지하3층과 지하2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구간이 복층형으로 되어있고 내부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에듀클럽 내 일부 공간에 관리형 독서실 및 특화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나, 위탁운영업체와의 계약은 향후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 또는 종료될 수 있으며, 이에따른 서비스변경 또는 중단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관리형 독서실 및 특화 교육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운영업체의 요청에 따라 일부 실의 위치 및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로당은 105동 서측 지상1층에 설치되고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및 다함께돌봄센터는 105동 하부 지상1층에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에는 어린이집 및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및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임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찬성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임주(예정)자 등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반대하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감사 신청전까지 관할지자체 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협약체결할 예정이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 고려할 때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임주예정자의 과반수 서면으로 반대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은 수 있습니다.
	스포츠클럽(피트니스, GX룸, 실내골프, 탈의실 및 사우나, 실내수영장, 카페테리아, 주방, 키즈카페, 런드러룸 등)은 105동 하부 지하2층에 설치되고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으며, 지상층과 연결되는 내부 엘리베이터 및 계단이 설치됩니다. 이로 인해 시설과 인접한 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조망권, 일조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클럽 전용 드림오프가 105동 하부 지하2층에 설치되어 동출입시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이용시 불편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단지 중앙 110동 남서측 지상1층에 별도로 설치되고, 지하층과 연결되는 외부 엘리베이터 및 계단이 인접하여 설치됨.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부속정원은 게스트하우스 각 실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었으며, 해당 공간에는 휴게 및 이용 편의를 위한 조정기시설물만 설치되며, 야외활동을 위한 가구, 장비 및 기타비용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고, 부속직원 이용과 관련 내용은 관리 규약에 따릅니다.
	클럽핑장은 임주민이 개인 휴게용품물 설치할 수 있는 데크 형태의 임주민 휴게공간으로, 별도의 클럽핑 운영 및 편의시설, 캠핑 관련 물품을 제공되지 않으며, 이용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화기 사용 및 숙박 행위는 불가한 피크닉 및 휴식 목적으로만 이용을 한정하며, 이용시간을 포함한 관련 내용은 임주후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차량화장공간에 인접하여 유치원 및 학원 등 통학차량의 승하차 대기공간인 '키즈스테이션'(추후 명칭 변경 가능)이 102동과 107동 하부 지하3층 데크에 설치되고,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놀이공간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부대복리시설의 보일러실 및 실외기실은 별도구획공간 또는 지붕, 지상출구공간, 계단 하부와 같은 내·외부에 설치되고, 추후 현장 여건에따라 조정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한 세대와 보행자에게 소음 및 진동, 팬 가동에 따른 바람이 전달되거나 조망권 침해 등 환경권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 일체의 운영 및 유지 관리는 임주민이 자체적으로 하여야합니다.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의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에 현관장 및 주방장이 제공되며, 바닥난방과 천장형 에어컨이 설치됩니다.
	작은도서관의 도서(1,000권) 및 가구류, 실내운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의 운동장비(단, 소모성 또는 개인장구류 제외) 및 탈의실 라커류는 제공되며, 기타 주민공동시설의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부대복리시설의 천장과 및 디자인은 시공성 및 설비, 전기 배관 등의 간섭 등으로 인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위치가 바뀌거나 구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종 홍보물(분양 카달로그, 커뮤니티 CG 및 동영상, 모형 등)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 운영 등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커뮤니티 내부 프로그램, 마감재, 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 및 단지내 공용부를 임주민의 임주지원 및 하자 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준공후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의 일부공간은 입주고객의 입주관리 및 A/S업무를 위한 입주관리사무실 및 A/S센터로 일정기간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등으로 변경될 계획이므로, 일부 사용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에 운동시설 설치 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공급시설	110동 인근 지하층에 저수조,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이 설치되며 해당동 저층세대는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스, 상하수도 등 인프라 시설 및 연결은 관할부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2동 지하2~3층, 108동 지하3층에 압송펌프실이 설치되며 101, 105, 106, 107동 지하3층에는 펌프실이 설치됩니다. (해당동 저층세대는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서측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준에 따라 가스 정압시설이 설치 될 예정이며, 설치 방법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주 및 경비실	단지 주출입구 인접하여 열주형 문주가 설치될 예정이며, 단지 부출입구변에 게이트형 문주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문주 및 경비실 계획은 본 공사시 보행동선 및 도로선형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고, 형태, 디자인, 크기 등은 현장여건 및 동선개선 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에 경비실이 각각 1개소 설치되며, 경비실 인접 주차차단기 설치로 외부차량 진입시 차량 대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통사항 (단위세대)	단위세대의 안목치수 및 발코니 면적상정 등의 법규는 기본형평면(발코니 비확장형, 단, 단열관련 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라 기본형 또는 확장형으로 진행가능)을 적용하며,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유무상 옵션(거실 및 복도 아트월, 주방벽마감, 가구, 가변벽체, 창호 옵션 등의 유사한 사항 등)으로 추가되는 마감재, 가구, 기기, 벽체 등의 두께(치수)는 안목치수 산정 시 제외하여 기본형 평면의 안목치수를 적용합니다. (단, 안목치수 산정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마감두께에는 벽체 바름층의 두께 등 미세한 치수(걸레받이, 천장물딩, 벽지 등)를 포함하지 않음) 예를 들어, 거실쪽의 안목치수가 4.5m일 때, 거실아트월타일, 타일 부착두께는 고려하지 않은 치수로, 석재, 타일 시공 시 실측치수는 해당자재 및 부착두께 만큼 줄어 들게 되고, 마감자재별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천장고는 H:2,350으로 일부 시공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4A, 84C타입 단위세대는 미러형 계획으로 인해 거실, 안방, 침실, 주방의 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시 동호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욕실 출입시 문턱에 의한 신발걸림은 하차사유가 아닙니다.
	인접 세대(상하좌우) 및 동일 세대 내부 각 부위별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하여 발코니 및 침실, 기타 일부 구간의 벽체 및 천정의 일부가 돌출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부분의 커튼박스, 물딩, 등박스, 걸레받이, 마감재, 가구류의 형태와 위치가 확장형 기준층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 수전 등은 확장형세대와 차이가 있습니다.
	옵션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의 종류 및 설치위치가 변경 됩니다.
	필로티 상부 세대의 경우 소방법규에 따라 세대 내 소방 피난용 완강기가 안방 또는 거실에 설치되며, 본 공사시 설치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인쇄물 및 견본주택 등에 제시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안목치수는 관련 기준에 따른 기본형 평면을 기준으로 하며, 옵션 및 마감재, 가구, 가변벽체 등의 추가 설치에 따른 두께는 안목치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내부 치수는 적용 마감재 및 시공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일 주택형이라도 동,호수 및 미러형 계획에 따라 평면이 좌우 대칭되거나 각 실의 향, 조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세대 천장고는 H:2,350을 기준으로 하며, 현관, 복도, 주방, 욕실 등 일부 공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바닥 마감 및 천장 내 설비, 배관 등의 시공 여건에 따라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통사항 (단위세대)	인접 세대 및 세대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른 추가 단열로 벽체, 천장 일부가 돌출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커튼박스, 물딩, 등박스, 걸레받이, 가구 등의 형태 및 위치가 도면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대 내부는 관련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 시공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견본주택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타 분양 주택과 마감사양이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 및 인허가도서에 제시된 사양 외 추가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세대는 품질 확보를 위해 공사 중 선행세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우물천장, 커튼박스 및 천장 물딩의 크기, 형태, 사양은 천장내부 설비 및 시공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욕실, 현관 등의 바닥 단차는 배수구배 시공에 따라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욕실 단차는 물넘침 방지를 위해 계획됩니다.
	골조와 경량벽체, 조적벽 등 이질적 접합부는 균열 방지를 위해 일부 마감면이 조정될 수 있으며, 마감재 시공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관,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 등의 타일 나누기 및 줄눈 위치는 주택형 및 시공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바닥 줄눈은 서로 일치 하지 않거나 간격이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일은 재료특성상 일부 휨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마감재 모서리 등에 재료분리대가 추가 설치 될 수 있습니다.
	인조석 및 엔지니어드스톤은 자재 특성상 이음부 및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이음 위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침실 벽지 마감은 봉투바름 공법으로 시공되어 테두리 및 매립박스 주변만 접착되며, 그 외 부위는 들뜬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목창호의 형태, 위치, 열림 방향 및 프레임의 규격, 재질 등은 본공사 시 시공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목창호 도어에는 손끼임 방지장치가 설치됩니다.
	각 실 도어 후면 상부에는 도어와 벽체의 충돌 및 하드웨어 간섭 방지를 위한 일자형 도어 스토퍼가 설치되며, 실외기실 도어에는 벽체 및 가구와의 간섭방지를 위한 바닥 고정형 도어스토퍼가 설치됩니다. 84타입은 실외기실 도어 상부 도어클로저 설치로 인해 바닥 고정형 도어스토퍼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품품목 및 마감관련 유의사항	욕실천장은 나누기도에 따라서 달대가 시공될 수 있으며, 욕실 출입문은 ABS계열 도어로 시공됩니다.
	주택형 및 공간치수에 따라 입주자가 개별 구매하는 가전제품 및 가구의 규격(폭, 높이 등)에 따라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용도실, 실외기실 등 일부 공간의 벽체하부에는 오염 방지를 위한 도장이 시공되며, 도장 색상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용도실은 설비 배관 설치에 따라 ABS 천장재 및 점검구가 설치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천장 높이, 천장재 나누기 및 점검구 위치가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세탁 및 건조로 인해 습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환기하시기 바랍니다.
	실외기실에는 하향식 파난구 설치에 따라 상,하부 세대의 파난을 위한 사설물이 천장 및 바닥에 설치됩니다.
	확장세대의 다용도실은 난방이 일부 적용되며, 난방적용 범위는 공간 및 주택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에는 별도의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단위세대 목창호 도어에는 손끼임 방지장치가 설치 됩니다.
	계약 이후 입주자가 개인 또는 단체의 요청에 따른 세대 내 설계, 공간 구성, 위치 및 마감재 등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발코니 확장 부위에 입주자가 별도로 시공, 설치한 마감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행한 확장 또는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발생한 하자, 파손, 훼손 등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원상복구를 하여야합니다.
	세대별 제품품목, 가구, 가전 및 마감재 등은 주택형에 따라 상이하므로 분양홍보물 및 마감자재 목록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허가 도서가 상이한 경우 분양홍보물을 우선합니다.
	세대 타입 및 옵션에 따라 가구, 마감재 및 조명 등의 위치와 디자인이 달라질 수 있으며, 중문, 도어, 욕실장 등 제작품의 디자인 및 세부 사양은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품목 및 자재는 법규,정책 변경, 인허가, 단종, 수급 여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동의서는 장구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마감재는 제조 시기 및 자재 특성에 따라 견본주택과 색상, 무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동일 제품이라도 일정한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일, 벽지, 시트, 인조석 등 공장 생산 자재의 품질 기준은 관련 KS 기준 및 시방서에 따릅니다.
	강마루는 천연 목재의 무늬를 이미지화한 제품으로, 패턴, 용이, 색상 등이 반복되거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건립세대의 가구는 확장형 및 유상옵선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비확장형 선택 시 가구의 구성 및 수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구의 마감, 규격 및 구성은 하자 방지와 사용성 개선 등을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치수는 마감재 및 단열 두께 등에 따라 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 및 유상옵선 가구는 마감재 및 전기배선 등과 연계 시공되므로 설치 후 이동이 불가합니다.
	가구 설치로 노출되지 않는 천장, 바닥, 후면 및 측면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가구 하드웨어 및 액세서리의 세부 사양은 품질 확보를 위해 본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수납가구 및 시스템가구는 좌우 대칭 여부와 안목치수에 따라 배치 및 깊이가 달라질 수 있으며, 동급 이상의 제품 적용 시 디자인 및 구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구 시공 특성상 타카핀 자국이 일부 보일 수 있으며, 이는 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방 상판은 물턱이 없는 구조로 사용 시 물튀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스배관 설치 위치에 따라 일부 주방 상부장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렌지후드 상부장 내부에는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되어 수납공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싱크볼 하부장 내부에는 온수분배기 및 전면 가림판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해당 하부장은 일반 주방 하부장과 깊이 및 수납공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방 및 수납가구의 내부 구성은 본공사 시 사용성 향상을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조명이 설치되는 가구는 배선 및 안정기 설치로 일부 수납공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방 기본 제품 빌트인 가전은 단종, 성능 개선 등 제조사의 사정으로 공급이 불가한 경우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동의서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하향식 피난사다리	피난용 하향식 사다리는 짝수층, 홀수층 교차되게 설치되며 발코니 상부에 피난용 하향식 사다리가 노출되어 있고, 1층 및 하부 필로티 세대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창호공사	외부창호 디자인 및 색상, 프레임 사이즈, 유리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인허가 진행, 풍동실험 및 외부 입면 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확장 세대는 외부 창호가 설치되지 않으며 분합창이 이중창으로 설치되고, 외부발코니에는 철재난간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확장옵선(유상)을 선택할 경우, 거실 및 안방 창호는 유리난간이 적용된 조광형 이중창(유리난간 일체형창호)이 설치되며 유리난간은 고정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중창의 외부창호는 유리난간이 설치되는 부위만 이동 및 개폐(슬라이딩식)가 가능하며, 유리난간이 설치되지 않는 창호는 안전상 고정되어 이동 및 개폐(슬라이딩식)가 불가능합니다.
	세대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높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루버창의 색상은 같은 타입이라도 동별/층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전기/설비	세대내 목창호, 여닫이 창호 및 일반가구/주방가구 문짝의 개폐방향은 수분양자의 편의를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용도실은 외벽 내부면에 단열재가 시공되어 도어에는 단열성능이 없으며, ABS재질로 제작되어 세탁기, 건조기 등 일부 소음이 주방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에는 계획되는 식탁 위치에 설치되고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세대분전함, 통합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공사시 시공여건에 따라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분전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주택용 분전반 업무처리방법 특별강조 지시사항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수 있으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통합단자함은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수 있으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세대 조명기구의 색온도는 4,000K(백색)으로 적용되며(직간접 일체형 조명제외) 고효율인증을 취득하므로 추후 6,500K(주광색)등으로 색온도 변경은 불가합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배선기구, 조명기구, 세대단자함, 환기디퓨저 등 각종 기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개소는 실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내 전제품은 디스플레이 가전, 인테리어 소품가구 및 패브릭, 연출용 조명(전사용 간접조명, 스탠드, 펜던트, 스팟조명 등)과 소품 등이 포함되며 이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됩니다.
	입주후 세대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전열기기로 인해 순간 전압강하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는 조명기구 및 타 가전제품의 작동 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세대 내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감형태, 천정 및 커튼박스, 창호, 가구 등)
	단위세대 에어컨 냉매 및 응축수 배관은 기본 타입(거실, 안방)으로 천장형배관 설치되며, 시스템에어컨 옵션을 선택한 세대는 별도 기본 냉매 및 드레인 매립/천장 배관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중복 설치되어 있더라도 하자 보증하지 않습니다.)
	욕실내 샤워부스바닥과 욕조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으며, 별도 욕실 제어용 온도조절기가 없습니다.
	세대 전열교환기는 실외기실에 필드 교체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장비와 연결 덕트가 노출로 설치되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대 주방배기가 당해층 직배기 방식으로 인접 세대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 등은 다용도실에 설치되며, 세대 평면 구조 및 현장 시공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달라 질수 있습니다. 또한 세탁기, 건조기 2단 적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급수용 공배관은 냉장고 후면 벽면 하부에서 주방 싱크대 하부장(온수분배기 근처)까지 공CD관이 매립설치 되며, 사용자가 별도 부속을 사용하여 급수분기하고 배관을 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각 층 세대 공용부 피트 내부에 급수 계량기가 설치되며, 외기에 취약한 일부 층에 동파방지열선(카바형)이 설치됩니다.
	동별 외부 가스배관 입상에 3층까지 방범용 배관카바가 설치됩니다.
	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은 주방 자동식소화기 설치공간으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세대 내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홀이나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주방 싱크대 하부에는 세대 난방 분배기가 설치되며, 하부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의 상부장은 수납장 내부의 깊이와 형태가 변경되거나 수납공간으로 사용 불가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환기용 전열교환기 급배기용 디퓨저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수전(세탁, 손빨래) 수전 높이 및 위치는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전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단위세대 내 커튼박스 사이즈 및 높이가 조절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커뮤니티센터,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경로당,어린이집,경비실)의 실외기 가동 시 인접세대에 소음 및 분진,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미관저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본주택의 옥외외부 표면상 헤아라인 정도의 기스는 제품 하자가 아니며 제품교체사항이 아닙니다.
	확장세대의 다용도실에 일부구간에 난방코일이 설치되며, 별도의 온도 제어용 온도조절기가 없습니다.
	비확장세대의 경우 발코니 및 다용도실은 비난방 공간입니다.
발코니 및 실외기실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발코니선출통 및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용도실 천장에는 점검구가 설치되며 위치는 타입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용도실 세탁기 설치구간의 바닥단차 및 다용도실 가구 형태, 적용 위치는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본주택에 설치된 바닥 타일 줄눈의 위치는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용도실, 실외기실 및 발코니의 타일 나누기는 본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및 실외기실은 단열재 추가 설치에 따라 구조체 등의 치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용도실 세탁기 설치공간의 바닥 단차의 형태·적용 위치는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선출통 및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택형 및 세대 위치에 따라 세탁배수용 입상배관이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같은 주택형이라도 배관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세탁기·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및 수전이 설치된 발코니는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창문을 닫고 보온 조치를 하는 등 동파 예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타일 시공 시 인접 타일과 줄눈 폭이 일부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타일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중문 등 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 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부동산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2007년 7월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의무화 조치(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가 시행됨에 따라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본 단지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시 현재 조건을 확인 후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 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시행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작물, 인쇄물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아파트 각 시설의 명칭, 외부 상세계획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색채심미, 법규변경, 현장시공 여건 및 상품 등 디자인 개선 등 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용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공급안내문, 분양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건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에 제작된 사전 홍보자료는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 건본주택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가능 하오니,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인접지역 개발 등의 사업으로 개설되는 도로 및 하천, 자연거 도로, 경관녹지, 완충녹지, 근린공원 등은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모형도, 단지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도로 및 하천, 경관녹지, 완충녹지, 근린공원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하기 바랍니다.
	각종 인쇄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각종 인쇄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양상담 관련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축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고고사인, 외벽가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단지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공간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종 인쇄물에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건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양상담 및 계약 과정에서 분양직원의 아래와 같은 행위는 당사의 지침과 위배된 사항으로 당사와 무관합니다. 1. 프리미엄 보장, 추가할인, 계약해제, 연체료 감면 및 이와 유사한 보장 행위 2. 계약 후 환매를 보장하는 행위 3. 분양대금을 제외한 일체의 금전거래 행위 4.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별도의 개별약정 행위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건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주의사항

- ① 본 제작물의 평면도 및 투시도 등의 CG 삽화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② 발코니 선출통 및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③ 발코니 난간의 높이나 형태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의 높이, 크기,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④ 발코니 측 외벽에 단열재 추가 설치시 가구 및 구조체 등의 치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⑤ 가변형 구조 변경 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⑥ 배치도(CG, 모형)의 단지 내·외부 도로선형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⑦ 주민공동시설은 기본마감까지만 시공되며, 이동가구 및 가전, 집기, 비품 등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⑧ 견본주택 단위세대에 설치된 소방 감지기, 유도등 및 비상방송용 스피커,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을 위한 소방설비로 실제 시공 시 변경됩니다.

	현장 주소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상신리 산 13-13 일원
	견본주택 주소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하길리 374 (화성 향남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 ※ 견본주택 내 주차 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 또는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문의	1551-1542
	공식 홈페이지	https://www.hwaseong-lottecastlesignature.com
	시행위탁자  Zellzone 시행수탁자  신영부동산신탁 시공  롯데건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